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17.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28.4조원(7.1%) 증가한 총지출 42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 재원조달 방법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재정건전성,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예산안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예산안의 주요 특징과 재정총량에 대하여 분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현금급여 재정사업과 같은 유형별 분석을 확대함으로써 거시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예산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소관부처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부처의 정책·사업들을 단위·세부사업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접근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전계획 수립과 절차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살펴봄으로써 예산안 분석의 틀을 유기적·통합적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재정사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편성·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분석시리즈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차 례

CONTENTS

국 회 운영 위원 회

[대통령비서실]

I. 예산안 개요 / 3

- 1. 현 황 3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4
- 3. 예산안 주요 특징 5

II. 개별 사업 분석 6

- 1.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제작 사업 통합 편성 필요 6

[대통령경호처]

I. 예산안 개요 / 13

- 1. 현 황 13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4
- 3. 예산안 주요 특징 15



II. 개별 사업 분석 / 16

1. 경호안전교육원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16
2. 올림픽경호 사업의 국내여비 등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8

[국회]

I. 예산안 개요 / 23

1. 현 황 23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24
3. 예산안 주요 특징 25

II. 개별 사업 분석 / 26

1.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관리 필요 26
2. 제70주년 제헌절기념행사 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29

[국가인권위원회]

I. 예산안 개요 / 35

1. 현 황 35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36
3. 예산안 주요 특징 37



CONTENTS

II. 개별 사업 분석 / 38

- 1. 지역인권체험관 운영 경비 조정 필요 38
- 2.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 사업의 신중한 추진 필요 41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I. 예산안 개요 / 49

- 1. 현 황 49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53
- 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54

II. 주요 현안 분석 / 56

- 1.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의 내역사업 정비 필요 56
 - 1-1. 세계헌법대회 지원 사업계획 미흡 및 세부사업 이관 부적절 57
 - 1-2.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한국법학원 보조금) 효과성 점검 필요 61
- 2. 특수활동비의 지속적인 집행 투명성 확보 노력 필요 65
- 3. 교도작업 정역 집행을 제고 노력 필요 등 68
 - 3-1. 교도작업 정역 집행을 제고 및 작업환경 개선 노력 필요 69
 - 3-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세출예산 편성 필요 72
 - 3-3.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 조정 필요 74



Ⅲ. 개별 사업 분석 / 76

1.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점검 필요 등	76
2.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80
3.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조직의 기타운영비 관련 검토	82
3-1. 공익법무관 기타운영비 편성 부적절	82
3-2. 보호관찰소 임시조직의 조속한 직제 반영 필요	84
4. ODA 사업의 통합적 관리 필요	86
5. 검사실 사무보조원 증원의 적정성 검토 필요	89
6. 회의장 임차료 절감 집행 필요	92
7. 정부법무공단 내 가용자금 활용을 통한 운영지원사업 예산조정 필요	95

[법제처]

I. 예산안 개요 / 101

1. 현 황	101
2. 예산안 주요 특징	102

II. 주요 현안 분석 / 103

1. 기관운영기본경비 통합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103
------------------------------------	-----

Ⅲ. 개별 사업 분석 / 106

1. 남북법제 관련 국외출장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06
2. 법제교육관련 강사수당 적정 수준 반영 필요	108



CONTENTS

[감사원]

I. 예산안 개요 / 111

- 1. 현 황 113
- 2. 예산안 주요 특징 114

II. 개별 사업 분석 / 115

- 1. 감사권익보호관 자문소요를 고려한 자문료 편성 필요 115

[대법원]

I. 예산안 개요 / 119

- 1. 현 황 119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23
- 3. 예산안 주요 특징 124

II. 개별 사업 분석 / 125

- 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 및 여비의 적정 예산편성 필요 125
- 2. 등기특별회계 세입추계 현실화 필요 130
- 3. 등기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재검토 필요 132



[헌법재판소]

I. 예산안 개요 / 137

- 1. 현 황 137
-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38
- 3. 예산안 주요 특징 139

II. 개별 사업 분석 / 140

- 1. 헌법재판연구원 사무공간 적정화 필요 140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1

현황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백만원(3.9%) 증가하였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1	76	76	79	3	3.9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898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300만원(2.0%) 증가하였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4,367	88,063	88,063	89,856	1,793	2.0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18년도 신규사업은 없다. 2018년 주요 증액사업은 국정평가관리, 정보화추진 사업이다. 국정평가관리 사업은 국민과의 직접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라인콘텐츠 제작 관련 내역 등이 증액되었고, 정보화추진 사업은 보안 취약점 개선, 노후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한 내역이 증액되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국정평가관리	3,868	3,868	6,518	2,650	68.5
	정보화추진	4,625	4,625	6,090	1,465	31.6
합 계		8,493	8,493	12,608	4,115	48.4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이에 대한 보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절감하였다. 특수활동비 등의 절감계획을 마련하여 업무지원비를 전년 대비 34억원(17.4%) 감액하였고, 대통령비서실의 광화문 이전 등을 감안하여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억원(21.2%) 감액 편성하였다.

2018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정보화추진 사업과 국정평가관리 사업에 각각 편성되어 있는 국민소통플랫폼 구축사업과 온라인콘텐츠 제작사업의 통합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국민소통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제작 사업 통합 편성 필요

가. 현 황

정보화추진¹⁾ 사업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중요 전산장비를 유지관리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여 안정적 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해킹 등 적대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이다.²⁾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6,500만원 (31.6%) 증액된 60억 9,000만원이다.

[2018년도 정보화추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정보화 추진		4,625	4,625	6,090	1,465	31.7
일반연구비	1,392	1,110	1,110	1,488	378	34.1
자산취득비	1,275	545	545	1,559	1,014	186.1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은 동 사업을 통해 직원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개발·유지보수하고, 장비교체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기록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12백만원),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및 운영(410백만원), VIP순방시 자료교환시스템 보안성 강화(161백만원), VDI³⁾시스템 고도화(100백만원), PC운용환경 고도화(394백만원), PC운용환경 변경에 따른 신규 문서보안체계 구축(268백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

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18년도 성과계획서」, 2017.9., p.13.

3)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2018년도 정보화추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운영	개발	유지보수	장비교체 등
기존	홈페이지 및 내부 업무시스템 운영 1,757→1,733(△24)	홈페이지 및 업무시스템 추가 개발 1,100→740(△370)	전용회선이용료, 기타운영지원 등 1,405→1,433(28)	◦ 노후장비교체 240 →220(△20) ◦ 업무용 컴퓨터 교체 113→155(42)
순증		◦ 기록관리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212 ◦ <u>국민소통 플랫폼인프라</u> <u>구축 및 운영</u> 410 ◦ VIP순방시 자료교환 시스템 보안성 강화 161 ◦ VDI시스템 고도화 100 ◦ PC운용환경 고도화 394 ◦ PC운용환경 변경에 따른 신규 문서보안체계 구축 268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0	노후 프린터교체 35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국정평가관리⁴⁾ 사업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에 관한 평가를 통해 올바른 정책을 정립하려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5,000만원 (68.5%) 증액된 65억 1,800만원이다.

[2018년도 국정평가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국정평가관리	3,273	3,868	3,868	6,518	2,650	68.5
일반연구비	1,756	2,047	2,047	2,487	440	21.5
자산취득비	0	0	0	557	557	순증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4) 코드: 일반회계 1131-301

대통령비서실은 동 사업을 통해 국정평가 및 성과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온라인콘텐츠 제작을 위한 카메라 등 영상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이다.

[2018년도 국정평가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기존	순증
운영비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대. 대통령메시지 운영 910(전년동)	-
공공요금및제세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 우편료 25→18(△7)	-
재료비	-	- 이동형 영상제작 소모품 42 - 고정형 영상제작 소모품 1,602
사업추진비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502(전년동)	-
연구용역비	- 일반연구비 2,047→2,488(441) : 여론조사경비 1,594→1,794(200), : 뉴미디어빅데이터분석 30(전년동), : <u>국정평가및성과콘텐츠 제작</u> <u>363→664(301)</u> - 정책연구비 270→130(△140)	-
자산취득비	-	- 이동형 영상제작 기자재 37 - 고정형 영상제작 기자재 520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과 온라인콘텐츠 제작 사업은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추진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으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영상기획물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4억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영상콘텐츠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방음, 전기·조명 설비 구축 경비 3억 5,000만원,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운영 경비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도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및 운영	0	0	0	410	410	순증
영상콘텐츠촬영스튜디오 방음, 전기·조명 설비 구축	0	0	0	350	350	순증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운영	0	0	0	60	60	순증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이러한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일반국민에 대한 정책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추진 사업 내의 다른 사업들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한편, 국정평가관리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국정평가 및 성과콘텐츠 제작 연구용역비 6억 6,400만원과 온라인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기자재 구입 경비 5억 5,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도 국정평가및관리를 위한 온라인콘텐츠 제작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비목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국정평가 및 성과콘텐츠 제작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363	363	664	301	82.9
온라인콘텐츠 제작 영상기자재 구입 경비	자산취득비	0	0	557	557	순증
소계		363	363	1,221	858	236.4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정평가 및 성과콘텐츠는 영상물로 제작되어 국민소통플랫폼(홈페이지)에 게시될 계획이고, 온라인콘텐츠 제작을 위해 필요한 카메라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정보화추진 사업의 국민소통플랫폼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국정평가관리 사업의 관련 콘텐츠 제작 사업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 및 콘텐츠 구축·운영이므로 두 사업의 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통령경호처

1

현황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1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원 (34.4%) 증가하였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02	93	93	125	32	34.4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894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800만원(2.0%) 감소하였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8,556	91,333	91,333	89,485	△1,848	△2.0

주: 총계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①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②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사업 등이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는 상용임금의 증액분이 반영되었고, 경호안전교육원 운영사업은 자산취득비 증액분이 반영되었다.

[대통령경호처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2,722	2,722	4,160	1,438	52.8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2,390	2,390	3,177	787	32.9
합 계		5,112	5,112	7,337	2,225	43.5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대통령경호처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① 자체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특수활동비(21.95억원 감액)와 업무추진비(5억원 감액)를 감액 편성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② 무기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기 위해 상용임금을 증액 편성하였다.

2018년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을 통해 2018년에 교육체계 개발·콘텐츠 제작 및 스마트교육훈련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경호안전분야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역량강화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올림픽경호 사업은 임차료, 유류비 등 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의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경호안전교육원의 교육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가. 현 황

경호안전교육원 운영¹⁾ 사업은 경호안전교육원(2016년 4월 완공)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8,700만원(32.9%) 증액된 31억 7,700만원이다.

[2018년도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1,719	2,390	2,390	3,177	787	32.9
인건비	431	856	856	1,042	186	21.7
운영비	513	1,394	1,394	1,349	△45	△3.2
연구용역비	0	140	140	130	△10	△7.1
건설비	312	0	0	0	0	0.0
유형자산	463	0	0	656	656	순증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분석의견

교육체계 및 콘텐츠 개발 사업과 스마트교육훈련시스템 도입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231-304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일반연구비 1억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 6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일반연구비는 교육체계 개발(6,000만원)과 교육과정 및 콘텐츠개발(7,000만원)에 자산취득비는 스마트교육훈련시스템 도입(6억 5,600만원)에 집행할 계획이다.

[2018년도 경호안전교육원 일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8년도 예산안
일반연구비(260-01목)	130
교육체계 개발	60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70
자산취득비(430-01목)	656
스마트교육훈련시스템 도입	656

자료: 대통령경호처

스마트교육훈련시스템 도입 사업은 2018년도 신규편성된 것으로, 경호요원의 직무전문성과 개인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2018년도 스마트교육훈련시스템 구축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안	비고
시스템/콘텐츠 제작도구 개발	480	- LMS, 콘텐츠, HTML5 제작툴 등
Flash콘텐츠/시스템 인프라	176	- Flash기반 콘텐츠 제작 및 기존자료 변환, 서버 등
계	656	

자료: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 공무원과 경호안전 관련단체 종사자에 대한 수탁교육을 담당한다. 이러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콘텐츠 개발, 활용 및 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올림픽경호¹⁾ 사업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완벽한 경호경비 업무수행을 위해 군·경·국정원 등 경호유관기관과 더불어 경호경비 통합작전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억 500만원(50.2%) 감액된 18억 9,100만원이다.

[2018년도 올림픽경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올림픽경호	0	3,796	3,796	1,891	△1,905	△50.2
운영비	0	1,741	1,741	1,311	△430	△24.7
여비	0	100	100	350	250	250.0
업무추진비	0	200	200	0	△200	순감
건설비	0	290	290	100	△190	△65.5
유형자산	0	1,465	1,465	130	△1,335	△91.1

자료: 대통령경호처

나. 분석의견

올림픽경호 사업의 임차료·유류비·국내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 사업 예산안에는 임차료²⁾·유류비 등 운영비로 13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한편, 국내여비가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250%) 증액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³⁾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231-307

2) 2017년도 임차료의 6월말 현재 집행액은 없다.

3) 대통령경호처의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코드: 일반회계 1231-301)은 2018년도 예산안에는 국내여비 1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2016년도 예산액 12억 2,000만원 중 8억 4,100만원(68.9%)이 집행되었고 3억 7,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다. 2017년도 예산액 12억 2,000만원은 2017년 6월말 현재 3억 5,000만원(28.7%)이 집행되었다.

[2018년도 올림픽경호 사업 운영비 예산안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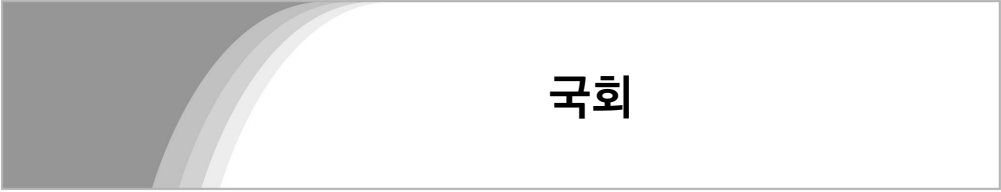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운영비	1,741	1,741	1,311	△430	△24.7
일반수용비	248	248	270	22	8.9
공공요금및제세	80	80	389	309	386.3
피복비	485	485	150	△335	△69.1
임차료	888	888	402	△486	△54.7
유류비	20	20	100	80	400.0
시설장비유지비	20	20	0	△20	순감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도 예산안의 임차료는 각국 요인들의 경호차량, 경호장비, 경호요원 사무실 임차를 위한 경비이고, 유류비는 경호차량 운영을 위한 경비이며, 국내여비로 경호요원의 숙박비·일비·식비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각 경비가 산출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엄격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



국회

1

현황

2018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3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800만원(16.2%) 증가하였다. 국회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717	2,021	2,021	2,349	328	16.2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

2018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984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1억 7,600만원 (4.2%) 증가하였다. 국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24,500	574,269	574,269	598,445	24,176	4.2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

국회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1개 사업이다.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경축식, 대국민행사 등 기념행사를 위해 12억 8,200만원이 반영되었다.

[국회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 (1개)	제70주년 제헌절기념행사	1,282

자료: 국회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①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② 법률정보지원 등이다.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은 공정 진행에 따라 1차년도 공사비 등의 반영으로 증액되었고, 법률정보지원은 세계의 헌법 번역 발간 및 외국법률번역 정보 공개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다.

[국회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	-	6,268	6,268	순증
	법률정보지원	440	440	688	248	56.4
합 계		440	440	6,956	6,516	1,480.9

주: 1.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설계 일정 등 고려 2017년 예산 미반영

2.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회

국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교섭단체 및 위원회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현안 입법지원토론회·행정입법 분석사업을 강화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였으며 ② 대한민국청년 일자리박람회 및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사업예산을 신규편성하는 등 국민대상 직접사업을 확대하고 ③ 특수경비·주차관리 등 간접고용사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였으며 의정활동지원 인턴·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④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및 국회스마트워크센터(국유재산관리기금) 건립 공사비 등 시설물 확충 소요를 반영하여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은 국회도서관의 자료보존공간 부족 해결 및 국가지식정보역량 확대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개발 및 부산시로부터의 부지매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공사 진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신도시 개발중인 자료보존관 건립 입지를 고려해 향후 이용자 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70주년 제헌절기념행사 사업은 2018년 제헌 제70주년을 맞아 제헌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제헌절경축식, 국제학술대회, 특집프로그램 제작,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회 내 다양한 부서가 주관하여 10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준비 및 평가·개선사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취합·정리되지 않고 있어 향후 관련 기록을 상세하게 정리·활용할 필요가 있다.

1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¹⁾ 사업은 국회도서관의 자료보존공간 부족 해결 및 국가 지식정보역량 확대를 위해 부산광역시에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²⁾ 2018년도 예산안에는 62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예산현액 (A)	8월말 실집행액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331	1,713	829	6,268	4,555	265.9
업무용역비	237	0	0	0	0	0
부지매입비	0	0	0	2,782	2,782	순증
기본조사설계비	94	557	557	0	△557	순감
실시설계비	0	1,156	272	0	△1,156	순감
공사비	0	0	0	3,079	3,079	순증
감리비	0	0	0	392	392	순증
시설부대비	0	0	0	15	15	순증

자료: 국회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033-301

2) 동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397억 4,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국회도서관이 자료보존관 건립 관련 용역을 실시(2014. 10. ~ 2016. 4.)하고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국회사무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도 예산현액 24억 5,000만원 중 3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1,300만원을 이월, 4억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나. 분석의견

첫째,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사업은 2016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업무용역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으로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관련 예산 3억 3,100만원만을 집행하고, 설계용역 계약금액 17억 1,300만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건립 부지를 당초 계획하였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에서 부산광역시가 새로이 개발하고 있는 강서구 명지동으로 변경(2016. 1.)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계획]

구 분		당초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사업 내용	건립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시민공원 내)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국제신도시
	대지면적	10,000㎡(3,024평)	32,000㎡(9,680평)
	시설규모	연면적 13,400㎡(4,053평)	
총사업비		397억 4,300만원	

자료: 국회

현재 건립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개발 완료와 함께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가 국유재산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동 사업은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국회사무처는 기본설계를 2017년 6월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는 2017년 10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건립위치 변경에 따른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계획에 따르면 열람공간과 전시공간 등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세부시설 계획]

용 도	면 적	비 고
자료보존	5,790㎡ (1,751평)	밀집서고, 디지털자료 보존서고
열람공간	1,653㎡ (500평)	열람실
전시공간	778㎡ (235평)	전시실, 세미나실
사무공간	850㎡ (257평)	사무실
기타 및 공용공간	4,329㎡ (1,310평)	기계실, 전기실, 식당, 복도 등
계	13,400㎡ (4,053평)	

자료: 국회

그런데 변경된 부지인 강서구 명지동은 당초 계획부지였던 부산진구 범전동에 비해 주민등록인구는 31%(116,889명), 세대수는 28%(47,489세대)에 불과하고, 현재 공영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변 대중교통 환경 등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는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이용자 수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연계망 확충 등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부산시와 협의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제70주년 제헌절기념행사¹⁾ 사업은 2018년 제헌 제7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제헌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국제학술대회, 제헌절경축식, 국회방송프로그램제작,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12억 8,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제70주년 제헌절기념행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제70주년 제헌절기념행사	0	0	0	1,282	1,282	순증
국제학술대회	0	0	0	101	101	순증
제헌절 경축식 등	0	0	0	339	339	순증
프로그램 직접제작	0	0	0	172	172	순증
채널 ID 제작	0	0	0	40	40	순증
외주제작	0	0	0	84	84	순증
기념행사	0	0	0	335	335	순증
특별전시	0	0	0	123	123	순증
엠블럼 개발	0	0	0	20	20	순증
국회의원 단체사진 제작	0	0	0	20	20	순증
참관기념품 제작	0	0	0	48	48	순증

자료: 국회

나. 분석의견

제70주년 제헌절기념행사 사업의 전체 과정을 정리·기록하여 향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제70주년 제헌절(2018.7.17.)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2037-300

[제70주년 제헌절기념 주요행사 계획안]

사업계획	비목	예산산출내역
국제학술대회	일반수용비(210-01목)	학술대회 사례금 5백만원 인쇄물 발간 29백만원 기념품 및 소모품 8백만원
	임차료(210-07목)	차량 및 통역장비 임차 7백만원
	국외여비(220-02목)	외국학술대회 참석자 초청여비 30백만원
	업무추진비(240-01목)	학술대회 오만찬 및 다과 22백만원
제헌절 경축식 등	일반수용비(210-01목)	제헌절 경축식 82백만원 인쇄물 25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목)	초청장 발송 2백만원
	임차료(210-07목)	발전차 7백만원 통역장비 및 프롬프트 임차 등 6백만원
	일반용역비(210-14목)	행사기획 및 운영 34백만원 무대 제작 및 행사장 마감 31백만원 영상제작 및 편집 등 23백만원 음향, 조명 및 증계 79백만원
	업무추진비(240-01목)	경축식 오만찬 지원 50백만원
제헌70주년기념 방송프로그램 직접 제작, 채널 ID 제작, 외주제작	일반수용비(210-01목)	프로그램 2개 제작비 172백만원 채널ID제작 40백만원
	일반용역비(210-14목)	60분물 8부작 1개 제작비 84백만원
기념행사, 특별전시, 엠블럼 개발, 국회의원 단체사진 제작, 참관기념품 제작	일반수용비(210-01목)	국회참관 기념품 제작 48백만원
	임차료(210-07목)	대형카메라 및 음향설비 임차 3백만원
	일반용역비(210-14목)	제70주년 기념행사 방송 등 제작비 260백만원 행사대행사 용역비 75백만원 제70주년기념 특별전시 123백만원 제70주년기념 엠블럼 제작 20백만원 제70주년기념 국회의원 단체기념사진 제작 17백만원

자료: 국회

한편, 국회는 제60주년 제헌절(2008.7.17.)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경축음악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 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영상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다.²⁾

이와 같이 동 사업은 10년마다 추진되는 대규모 행사로서 사업내용이 다양하고 국회의 여러 부서(법제실, 국제국, 방송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등)가 협력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전준비과정부터 사업추진 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등이 종합적으로 취합·정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제70주년 제헌절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많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사업관련 기록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향후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2008년도에 처음으로 10년 주기의 통합 제헌절기념행사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1

현황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백만원 (4.8%) 감소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3	21	21	20	△1	△4.8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12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600만원(6.5%) 증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6,936	29,289	29,289	31,204	1,916	6.5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① 지역인권문화 확산 ②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③ 국제교류협력 ④ 인권단체 공동협력 등이다.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은 강원인권체험관 개소, 지역연계 인권증진활동 관련 일반수용비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은 상담 및 진정서비스 개선 내역사업이 신규 반영되었다. 또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Global Aging Center 개소에 따라 내역사업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은 지자체 및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을 위해 내역사업이 신규 반영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증 감	
		본예산	추경(A)	예산안(B)	B-A	(B-A)/A
일반회계 (4개)	지역인권문화 확산	170	170	485	315	185.3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165	165	232	67	40.6
	국제교류협력	884	884	1,156	272	30.8
	인권단체 공동협력	124	124	224	100	80.6
합 계		1,343	1,343	2,097	754	56.1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2017년 6월 강원 인권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인권체험관 신설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② 상담 및 진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조사·상담실 흡음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③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회원국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연구 및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국제 허브 구축을 위해 ASEM Global Aging Center 설립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④ 국가 차원에서 지방 인권레짐을 총괄하여 전국적인 인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인권현안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인권대회 개최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201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단위 인권문화 접근성 제고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민에 대한 차별 없는 인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지역인권체험관 신설 일정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영 경비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인권옹호활동을 지원하고 인권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사업으로, 인권침해의 피진정기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업무 수행 필요성과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지역인권체험관 운영 경비 조정 필요

가. 현 황

지역인권문화 확산¹⁾ 사업은 지역단위 인권문화 접근성 제고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민에 대한 차별 없는 인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500만원(185.3%) 증액된 4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지역인권문화 확산	440	170	170	485	315	185.3
인권체험관 운영	281	96	96	386	290	302.1
시민참여형 인권문화 확산	67	34	34	34	0	0.0
인권문화조성네트워크 운영	92	40	40	65	25	62.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현재 광주·부산·대구·대전 등 4개의 지역인권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2018년에는 강원지역에 인권체험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강원인권체험관 신설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4,100만원과 5개 지역인권체험관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²⁾ 임금 등 2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1-303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체험관의 운영을 위해 2018년도부터 체험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상시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해당 인력은 참여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진행·지원, 인권전시 등 행사운영·지원, 인권체험관 운영 관련 안내·접수, 인권체험관 전시물 등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8년도 지역인권체험관 설치 및 운영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금액
강원 인권체험관 신설	시설비	- 강원인권체험관 신설 80	80
	자산취득비	- 강원인권체험관 신설 46 - 장애인편의장비 구입 15	61
	소계		141
5개 인권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상용임금	- 체험프로그램 코디네이터(5명)	144
	일반수용비	- 자원봉사자 및 강사 사례비(5사무소*50,000원*30회) - 역량강화강사 사례비(5사무소*250,000원*2회) - 기념품제작(5사무소*1,000,000원) - 체험용 교구 및 문구 구입(5사무소*1,000,000원) - 전시전개최 및 운영(1,000,000원*2회*5사무소) - 홍보인쇄물제작(250,000원*2회*5사무소)	34
	공공요금 및 제세	- 전기, 냉난방, 통신요금(5사무소*130,000원*12월) - 우편요금(200,000원)	8
	임차료	- 인권체험관 운영(대구체험관 장비 임차료)	2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 인권체험관 운영(5사무소*1,200,000원)	6
	국내여비	- 체험관 운영회의 참석(5개소*40,000원*4명) - 프로그램 협의 등(5개소*20,000원*2명*6회) - 체험강사 교육 출장(5개소*65,000원*2일*2명)	3
	사업추진비	- 자원봉사자 및 강사 간담회(400,000원*5개소) - 관계기관 업무협의(400,000원*5개소)	4
	고용부담금	체험프로그램 코디네이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27
	복리후생비	체험프로그램 코디네이터	2
	자산취득비	장애인편의장비 구입(대전)	15
	소계		245
	합계		38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2018년도에 신설할 계획인 강원인권체험관 운영 경비는 체험관 신설 일정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9월 현재 강원인권체험관의 위치를 복합커뮤니티센터(구 원주여고), 남원주역사,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등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2018년도 1/4분기에 체험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강원인권체험관 설치 계획]

구 분		추진계획
2017	3/4분기 - 4/4분기	유관기관 협의/프로그램 개발 등
2018	1/4분기	인권체험관 신설(신설 공사 등)/인권체험관 관련 홍보활동
	2/4분기	인권체험 프로그램 운영/전시전 개최 등
	3/4분기	인권체험 프로그램 운영/전시전 개최 등
	4/4분기	사업 운영에 따른 결과 보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그런데 지역인권체험관 운영비는 신설될 강원인권체험관을 포함한 5개소에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체험관 개소를 위해서는 인권체험관 개소 전에 인권체험관에 대한 시범운영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인권체험관 운영비 중 인권체험관이 설치된 이후에 집행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체험관 신설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 사업의 신중한 추진 필요

가. 현 황

인권단체 공동협력¹⁾ 사업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인권옹호활동을 지원하고 인권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사업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원(80.6%) 증액된 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증액된 1억원은 신규 내역사업인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의 예산안이다.

[2018년도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인권단체 공동협력	123	124	124	224	100	80.6
인권단체 보조금 지원	115	115	115	115	0	0.0
사업심사 및 이행 점검	9	9	9	9	0	0.0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공동협력	0	0	0	100	100	순증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나. 분석의견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업무 수행 필요성과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및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 해당 사업비 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²⁾

오명희 예산분석관(ruby728@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036-303

2) 동 사업의 예산안에는 토론회 추진에 필요한 장소임차료, 자료집 제작경비, 사례비, 여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 사업과 인권단체 공동협력 사업으로 내역을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협력 필요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 인권레짐³⁾은 인권보장의 최전선에서 개인의 인권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한계점⁴⁾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차원에서 지방 인권레짐을 총괄하여 전국적인 인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인권현안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⁵⁾에 따라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국가인권위원회 예규)에서는 인권침해의 피진정기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은 신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및 내용 관련 규정]

1.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등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역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업무협약체결의 대상기관이 위원회의 피진정기관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 업무협약의 내용

-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기존 권한이나 의무를 확인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한정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입법 목적을 넘는 새로운 권한이나 의무의 생성을 내용하는 경우,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된다.
- 업무협약에 위원회의 정책과 배치되거나 상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국가인권위원회 예규)

3) 인권레짐(human rights regime)은 유엔을 위시로 한 ‘국제(international)’, 각 대륙별 인권재판소 등 ‘지역(regional)’,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national)’, 그리고 ‘지방(local) 단위 등 네 개의 층위로 구성된다.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인권기구들은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도모하고 있으나 인권에 관한 경험 부족 및 인력·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인권문화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도부터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내 인권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침해 등의 감시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력사업의 파트너가 인권침해의 피진정기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는 점에서 업무협력 범위, 절차 등 공동협력에 관한 기본 원칙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인권보호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교도작업특별회계 및 1개 기금(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2조 1,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8억원(9.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9,145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1,299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11억원이다.

[2018년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645,784	1,858,895	1,858,895	2,044,397	185,502	10.0
- 일반회계	1,541,322	1,756,682	1,756,682	1,914,472	157,790	9.0
- 교도작업특별회계	104,462	102,213	102,213	129,925	27,712	27.1
기 금	107,549	101,869	101,869	101,145	△724	△0.7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7,549	101,869	101,869	101,145	△724	△0.7
합 계	1,753,333	1,960,764	1,960,764	2,145,542	184,778	9.4

주: 총수입 기준

자료: 법무부

2018년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은 3조 5,0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02억원(4.8%)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조 3,559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666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36억원이다.

[2018년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3,171,389	3,214,022	3,261,601	3,422,506	160,905	4.9
- 일반회계	3,120,000	3,155,451	3,203,030	3,355,916	152,886	4.8
- 교도작업특별회계	51,389	58,571	58,571	66,590	8,019	13.7
기 금	90,486	84,349	84,349	83,635	△714	△0.8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0,486	84,349	84,349	83,635	△714	△0.8
합 계	3,261,875	3,298,371	3,345,950	3,506,141	160,191	4.8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법무부

나. 세입·세출

2018년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조 4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5억원(10.0%)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1조 7,567억원에서 2018년 1조 9,145억원으로 9.0% 증가하였으며, 교도작업특별회계는 1,022억원에서 1,299억원으로 27.1% 증가하였다.

[2018년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41,322	1,756,682	1,756,682	1,914,472	157,790	9.0
교도작업특별회계	104,462	102,213	102,213	129,925	27,712	27.1
합 계	1,645,784	1,858,895	1,858,895	2,044,397	185,502	10.0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2018년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3조 5,6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06억원(5.3%)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3조 2,831억원에서 2018년 3조 4,360억원으로 4.7% 증가하였으며, 교도작업특별회계는 1,022억원에서 1,299억원으로 27.1% 증가하였다.

[2018년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214,856	3,235,561	3,283,140	3,436,026	152,886	4.7
교도작업특별회계	86,244	102,213	102,213	129,925	27,712	27.1
합 계	3,301,100	3,337,774	3,385,353	3,565,951	180,598	5.3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계획안은 1,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0.7%) 감소하였다.

[2018년도 법무부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7,549	101,869	101,869	101,145	△724	△0.7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2018년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지출계획안은 1,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0.7%) 감소하였다.

[2018년도 법무부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7,549	101,869	101,869	101,145	△724	△0.7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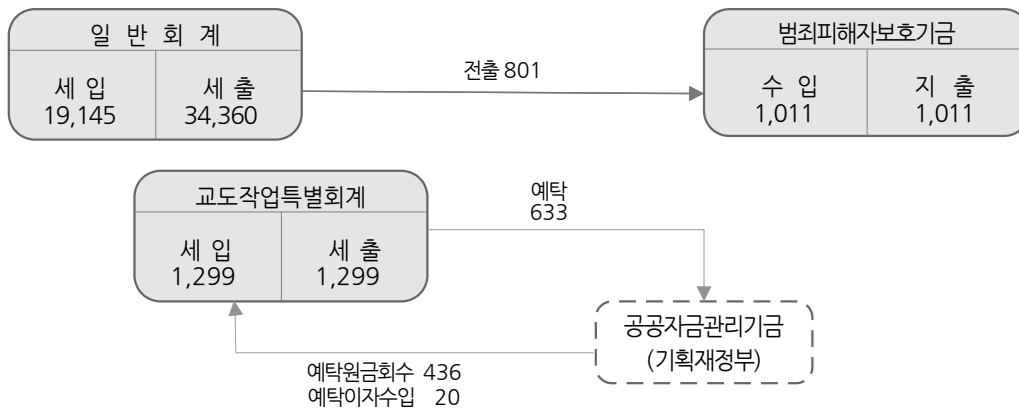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18년도 법무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801억원 전출되었다.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33억원을 예탁하였으며, 예탁원금회수 및 예탁이자수입은 각각 436억원, 20억원이다.

[2018년도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1개 사업, 9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건비 사업은 2016년 10월 개청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직원의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다.

[법무부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일반회계(1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인건비	873

자료: 법무부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②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③ 시설보완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사업은 중재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중재센터 설립 비용이 신규반영되었고,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은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10차 세계헌법대회 및 제5차 세계성년후견대회 행사비가 신규반영되었으며, 시설보완 사업은 교도소 수용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연계형 및 직업훈련연계형 교도작업장 설치 비용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확대되었다.

[법무부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개)	성장동력확충을위한 기업법제선진화	2,423	2,423	4,596	2,173	89.7
	변호사제도의선진화	1,085	1,085	2,332	1,247	114.9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494	2,494	3,306	812	32.6
	이민정책개발지원	278	278	410	132	47.5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2,849	2,849	4,943	2,094	73.5
교도작업 특별회계 (1개)	시설보완	2,215	2,215	7,297	5,082	229.4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법무부

2018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무료법률구조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였고 법률홈닥터를 5명 증원하는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고 ② 교정시설 수용자의 과밀수용 해소를 통한 처우개선 및 출소 후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교도작업을 강화하였으며 ③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피해회복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1개소 증설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스마일센터 총괄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8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230목)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2017년 특수활동비 예산액 192억 6,700만원 대비 10%를 감액하고, 10%를 기타 경비로 전환하여 2018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특수활동비 20%를 감액한 154억 1,300만원을 편성¹⁾하였다. 그러나 동 예산은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국회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후 통제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집행 투명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형사보상 사업은 최근 5년간 매년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으로서, 국회에서 지속적인 예비비 사용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018년 예산안에 2017년과 동일한 275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지급 평균액인 567억 4,600만원, 2016년 결산액인 317억 6,9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형사보상금에 대해서는 국가배상금과 달리 명문상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연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실소요액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1) 정보사업비 및 특별감찰관 소관 제외 기준

셋째,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정책과제 반영을 위하여 각 부처의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²⁾하였으나, 법무부의 2018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관행적인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에 따르면 회의장은 각급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매년 회의장소 임차료로 호텔 등을 임차하고 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편성된 임차료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5. 19.),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지침 통보-새정부 정책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

1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의 내역사업 정비 필요

법무부는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¹⁾을 통해 변호사 관리·감독 및 비위예방 강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12억 4,700만원 증액된 23억 3,200만원으로, 마을변호사 제도, 법조윤리협의회 보조금(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및 한국법학원 보조금(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신규 내역사업으로 변호사민원처리시스템(7억 9,200만원), 세계헌법대회 지원(2억 9,000만원), 세계성년후견대회 지원(1억원)²⁾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1,300	1,085	1,085	2,332	1,247	114.9
변호사제도개선	91	161	161	161	0	0
마을변호사제도운영	140	140	140	245	105	75.0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140	144	144	144	0	0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지원	379	340	340	255	△85	25.0
민·상사법학 연구 지원	500	300	300	300	0	0
한국법률가대회 지원	50	0	0	45	순증	순증
변호사민원처리시스템(신규)	0	0	0	792	순증	순증
세계헌법대회 지원(신규)	0	0	0	290	순증	순증
세계성년후견대회 지원(신규)	0	0	0	100	순증	순증

자료: 법무부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8-303

2) 세계성년후견대회는 40여개국 500여명의 정부관계자, 후견인, 판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교수 등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의 권익 옹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격년으로 개최하는 대회로서, 성년후견제도 운영 실무사례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제1회는 2010년 일본(요코하마), 제2회는 2012년 호주(멜버른), 제3회는 2014년 미국(워싱턴), 제4회는 2016년 독일(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며 제5회 대회는 2018년 10월 17일~20일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8년은 대한민국에서 후견제도를 시행한 지 5주년(2018년 7월 중전 금치산, 한정치산자 선고 효력 상실 예정)이 되는 해로서, 대법원 또한 동 대회를 한국성년후견학회, 한국가족법학회 등과 공동 주최하기 위하여 2018년 예산안에 사실심 충실화(1144-407)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세계성년후견대회 지원비 1억원을 편성하였다.

1-1. 세계헌법대회 지원 사업계획 미흡 및 세부사업 이관 부적절

가. 현 황

세계헌법학회(IACL: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³⁾는 전세계에서 약 1,000여명이 참여하는 헌법학계의 최대 학술단체로서 한국은 1985년에 지부를 설립했다. 동 학회는 1982년부터 4년마다 각국 헌법체계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해 ‘헌법학자들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헌법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8년 6월에는 서울에서 제10차 대회를 개최할 예정⁴⁾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동 대회 개최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320-01목)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대법원은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억 2,000만원, 헌법재판소는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다.

[기관별 세계헌법대회 지원 계획]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코드)	내역사업	예산액
법무부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1038-303)	세계헌법대회 지원	290
대법원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120
헌법재판소	재판활동운영지원 (1036-305)		90

자료: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세계헌법학회(IACL): 헌법 교류 증진 및 세계 헌법 발전을 목표로 1981년 조직된 학회로 현재 200여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

4) ○ 제10차 세계헌법대회 개최계획

- 기간 및 장소 : 2018. 6. 18.~6. 22, 여의도 콘래드 호텔(잠정)
- 주제: 폭력적 충돌, 평화구축 그리고 헌법
- 주최: 2018세계헌법대회 조직위,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 참여: 1,000여명(150여 개국에서 700여명 참석)
- 한국 측 참석자: 한국공법학회, 헌법학회 회원 등 헌법학자들, 법무부와 법원, 헌법재판소, 기타 법률 담당 공무원,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300~600명 참석 예상

나. 분석의견

첫째, 법무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세계헌법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5억원을 소관 세출예산안에 각각 나누어 편성하였는데, 각 기관 간 비용분담 기준 및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다.

동 대회는 ‘사단법인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와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으로서,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하여 각각 2억 9,000만원, 1억 2,000만원, 9,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조직위원회는 행사 개최에 총 16억 9,5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법무부는 외빈 초청 항공료 및 숙박비의 일부, 대법원은 통역비와 식비 일부, 헌법재판소는 소모품비, 음료비, 행사진행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여 기관 간 비용분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⁵⁾ 또한, 이처럼 동일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을 여러 기관의 세부사업에 분산하여 편성할 경우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둘째, 법무부는 2억 9,000만원을 모두 외빈 초청 항공료 및 숙박비로 집행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참석인원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부족분에 대하여 ‘사단법인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측의 충당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최초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150여 개국 헌법 권위자 700여명이 5일간 개최되는 대회 참석을 위하여 내한할 것이며, ‘자비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관광, 교통, 숙박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설명을 기재하였으므로, 항공료 및 숙박비를 지급할 참석 외빈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참석자 명단 및 정확한 인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법무부는 확정된 전체 개최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여비 부족분에 대한 학회 측의 자체 충당 계획 등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사 개최 계획을 살펴보고, 조직위원회의 자체수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⁶⁾

5)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각 기관이 논의를 통해 개최 장소, 형식, 규모 등 세부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며, 5일 간 이어지는 대회의 일부 세션을 전담하여 주관하는 방안 또는 각 세션별 주제, 진행 방법, 패널 선정 등을 공동하여 주관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2017년 9월 현재).

[2018년도 세계헌법대회 소요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요구	세부내역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계	1,695		290	120	90
○ 운영비	342				
- 비품 등	38	- 문구류 등			
- 통역비	162	- 영어, 불어 통역 등		영어, 불어 통역 등(61)	
- 행사 물품비	88	- 카메라, 비디오, 부스, 수신기, 컴퓨터 등			소모품 구입, 기타 운영비(26)
- 자료 제작비	53	- 초청장, 포스터, 보고자료 등			
○ 식비 등	353	- 회의 개최 식비(298) - 음료비(55)		회의 개최 식비(59)	음료비(11)
○ 임차료	238	- 교통수단 대여(38) - 대관료(200)			
○ 여비	550	- 외빈초청 항공료(379) - 숙박비(171)	외빈초청 항공료(159), 숙박비(130)		
○ 인건비 등	212	- 행사 진행인력 인건비 등			행사 진행 인력 인건비(53)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법무부는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세계헌법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면서, 해당 내역이 포함된 세부사업을 변경(2017년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2018년 변호사제도의 선진화)하였다.

법무부는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10차 세계헌법대회 지원을 위하여 2017년도 예산에는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⁶⁾ 사업에 ‘세계헌법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예산안에는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에 ‘2018년도 세계헌법대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다.

6) 자체적인 수입 증대 또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충당이 가능한 사업은 민간보조사업 편성 제외 대상이다(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4., p.110).

7) 코드: 일반회계 1033-300

이와 같이 동일한 내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세부사업을 달리 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법무부는 각종 행사 보조금의 통합이 필요하고, 동 행사경비가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보다는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등 법률서비스 증진 쪽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편성방식은 사업구조를 복잡하게 하여 국회의 원활한 예·결산 심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1-2.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한국법학원 보조금) 효과성 점검 필요

가. 현 황

법무부는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이하 “한국법학원”)⁸⁾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한국법학원 민간경상보조(320-01목) 총액은 3억 4,500만원으로, 이는 격년으로 짝수 해에만 지원하는 한국법률가대회 개최비(4,500만원)와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3억원)으로 구성된다.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사업은 민사분야 기본법인 민법 및 민사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하여 한국법학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부터 실시되었다. 사업 첫 시작년도인 2016년에는 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한국법학원의 시설비 및 임대보증금 지출이 완료됨에 따라 3억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예산안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예산의 대부분은 연구원(6명) 및 행정원(1명)의 인건비성 경비(2억 8,700만원)이다.

참고로, 대법원 또한 재판일반경비지원⁹⁾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한국법학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격년으로 짝수 해에만 지원하는 한국법률가대회 개최비(4,500만원), 민·상사 법률연구 지원(3억원)으로 법무부와 동일하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으로 한국법제연구원(1990년 설립)이 있으나 대부분 공법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상사법 분야는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전문연구기관이 부재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연구용역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현안 위주의 단편적 연구로 연구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8) 한국법학원은 법률문화의 향상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번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현재 부원장직은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법무부 차관 등이 맡고 있다. 법무부는 2007년 「한국법학원육성법」 제정에 따라 한국법학원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국법학원의 행사인 ‘한국법률가대회’를 짝수 연도마다 보조해 왔다.

○ 소재지: 기존 서울중부등기소 내 소재하였으나,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사업으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받아 2016년 7월 서초동으로 이전

○ 구성(인원)

- 이사회: 원장(1), 부원장(5), 상임이사(6), 이사(11), 감사(2)

- 사무국: 사무국장(1), 직원(1)

- 민·상사 법학연구(2016년 7월부터 운영): 박사 등 연구원(6), 행정지원(1)

9) 코드: 일반회계 1143-404

[2018년도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명	법무부	대법원
세부사업명	변호사제도의 선진화(1038-303)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내역사업명	민·상사 법학연구 지원	민·상사 법률연구 지원
인건비	290 (연구팀 전문위원 3명×3,900만원+기타 전문위원 3명×3,800만원+행정지원 1명×2,650만원+7명 연금지급금 1,082만원+7명 퇴직적립금 2,148만원)	90 (행정지원 2명×4,500만원)
운영지원비	10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출장비 등)	210 (임차료 9,240만원+저스티스 발간비 4,200만원+강좌 개설 및 학술회의비 4,800만원+기타 운영비 2,760만원)
계	300	300

자료: 법무부,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동 사업과 별도로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¹⁰⁾ 사업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¹¹⁾ 사업의 법제연구용역비로도 정책연구용역을 상시 발주하고 있는데, 타 사업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법학원은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사업에서 2016년에 보조금 5억원을 교부받아 그 해 7월 민·상사 학술연구부를 설립한 이후 연구원 6명을 채용하여 반기 동안 4개의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였고, 2017년에는 보조금 3억원을 교부받아 6명의 연구원이 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사업에서는 2억 2,000만원으로 연간 12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에서는 2억 3,000만원으로 연간 6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연구용역 참여자는 대부분 대학교수, 로펌의 변호사 등이고 한국법학원에 채용된 연구원들은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과정 수료자 등임을 고려할 때 각 사업간 투입 대비 산출효과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제 관련 연구 실시내역 비교]

세부사업명 (코드)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1033-300)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1033-304)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1038-303)
내역사업명	법제연구용역비	법제연구용역비	민·상사법학연구 지원 (한국법학원 보조금)
최초사업년도	계속사업	계속사업	2016년~
비목	일반연구비 (260-01목)	일반연구비 (260-01목)	민간경상보조 (320-01목)
예산액	2억 2,000만원	2억 3,000만원	3억원
사업추진방식	입찰 또는 수의계약	입찰 또는 수의계약	법무부 요청 또는 협의

10) 코드: 일반회계 1033-300

11) 코드: 일반회계 1033-304

세부사업명 (코드)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1033-300)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1033-304)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1038-303)
연구용역 결과물 (2016년 종료 기준)	1	면접교섭권자 확대 방안 등에 관한 연구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 필요성 연구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법제 정비
	2	출생신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복합중재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공동주택인 집합건물에 관한 법적 규율의 통합 방안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피해자 구제 개선방안 마련	스포츠중재 활성화 방안 연구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4	전자문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규율 방안 연구	복합중재센터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5	성년후견제도 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공익신탁 회계기준 연구	-
	6	공익법인 관련 총괄 기구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기부연금신탁 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7	집합건물법상 표준 관리규약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
	8	퍼블리시티권 입법화에 관한 연구	-	-
	9	싱가포르와 독일의 성년후견 지원 정책 연구	-	-
	10	공유자 우선매수권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
	11	법령의 위헌성 심사 기준에 관한 연구	-	-
	12	정보기본권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특수활동비(230목)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¹⁾로서, 주로 정보활동 수행자의 교통비·식비·숙박비,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례금, 기타 국가기밀의 보안 유지와 사업내용이 노출될 경우 정책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편성·집행된다.

법무부는 2018년 예산안에 2017년 특수활동비 예산액 192억 6,700만원 대비 20%를 감액한 15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다.²⁾ 감액분 20% 중 10%는 순감액분이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19억 2,650만원은 특정업무경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환³⁾한 것이다.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4., p.201.

2) 정보사업비 및 특별감찰관 소관 제외 기준

3) 특정업무경비 1,331.3백만원, 업무추진비 115.2백만원, 기타운영비 480백만원

[2017~2018년 특수활동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사업 코드	2017년 예산 (A)	2018년 예산안 (B)	증감액 (B-A)	타 비목 전환내역
1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 법무관 운영	1031-300	61	49	△12	업무추진비 6
2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 지원	1032-300	15	12	△3	업무추진비 1.5
3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정보화)	1334-501	270	216	△54	특정업무경비 27
4	검찰수사지원	1335-300	1,090	860	△230	특정업무경비 115
5	수사일반	1335-301	11,313	9,058	△2,255	특정업무경비 647 기타운영비 480
6	공안수사	1335-302	788	631	△157	특정업무경비 79
7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1335-303	3,245	2,596	△649	특정업무경비 325
8	마약수사	1335-304	609	487	△122	특정업무경비 61
9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 비리 사범 단속	1335-306	548	438	△110	특정업무경비 55
10	공소유지	1337-300	18	18	-	
11	소년원생수용	1632-300	138	114	△24	업무추진비 12
12	치료감호자수용관리	1634-300	6	6	-	
13	보호관찰활동	1635-300	153	129	△24	업무추진비 12
1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215	172	△43	특정업무경비 11 업무추진비 11
15	법무실 기본경비	7011-253	4	3	△1	업무추진비 0.5
16	외국인본부기본경비	7011-255	191	138	△53	업무추진비 19
17	교정본부기본경비	7011-257	263	211	△52	업무추진비 26
18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	7011-261	77	50	△27	업무추진비 13
19	인권국 기본경비	7011-263	117	94	△23	특정업무경비 12
20	출입국관리사무소운영 기본경비	7018-250	146	131	△15	업무추진비 15
	소계		19,267	15,413	△3,854	

주: 정보사업비 및 특별감찰관 소관 제외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증빙 없이 현금 집행이 가능하여 집행상 재량이 크고, 예산안 편성 시에도 총액으로 편성되어 적정성을 심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선언적인 의무만이 존재한다.⁴⁾ 또한, 특수활동비는 별도의 증빙 없이 현금 집행이 가능하여 집행상 재량이 크므로 본래 목적인 수사 등에 집행하였는지 국회의 결산 심사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축 및 내역 공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시 ‘특수활동비 집행 투명성 제고 필요’로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으며, 법무부는 사무감사, 예산 지도점검 등을 통해 현금사용을 자체하고, 집행내용확인서 생략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조치 완료’로 답변한 바 있다.

또한, 법무부는 ‘법무부·검찰청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T/F’를 구성(2017. 6. 8.)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 자체 특수활동비 집행계획 수립 시 총액으로 계상된 특수활동비 내역을 구체화·세분화한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 ② 현금 집행 시 현금수령증은 반드시 구비하고 집행내용확인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생략(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시 부서장 사전 결재), ③ 기관장·부서장 책임 하에 특수활동비 집행일·금액·지급대상자·지급사유 등을 기재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작성 등이다. 따라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해당 제도개선 방안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4) 기획재정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 1., p.171.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는 「교도작업특별회계법(1961년 제정)」에 근거하여 교정기관의 교도작업 운영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별도의 국고보조 없이 교도작업에 따른 자체수입금으로 소요경비를 충당한다. 현재 전국 52개 기관에서 일평균 22,000여명이 교도작업¹⁾에 종사하며 직영물품(피복, 식품) 등 200여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교특회계 세입의 대부분은 교도작업 수입이고, 기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출은 교도작업 수행을 위한 작업재료비, 작업장 신축 등 시설보완비, 공자기금 예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교특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1976년 이후 집행되지 않았던 예비비 4억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2018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결산	2017예산 (A)	2018예산안 (B)	증 감	
				(B-A)	%
총 계	86,244	102,213	129,925	27,712	27.1
1535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	50,892	57,500	66,004	8,504	14.8
교도작업(1535-300)	45,945	49,610	52,881	3,271	6.6
직업훈련(1535-301)	2,925	5,675	5,826	151	2.7
시설보완(1535-302)	2,022	2,215	7,297	5,082	229.4
7012 본부기본경비	299	339	359	20	5.9
교특회계기본경비(7012-250)	299	339	359	20	5.9
7019 소속기관기본경비	198	257	227	△30	△11.7
소속기관기본경비(7019-250)	198	257	227	△30	△11.7
7069 예비비	-	475	-	△475	순감
예비비관리(7069-300)	-	475	-	△475	순감
8910 공공자금예탁	34,855	43,642	63,335	19,693	45.1
공공자금예탁(8910-890)	34,855	43,642	63,335	19,693	45.1

자료: 법무부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작업의 종류는 직영작업, 위탁작업, 노무작업, 운영지원작업으로 구분된다.

3-1. 교도작업 정역 집행을 제고 및 작업환경 개선 노력 필요

가. 현 황

「형법」 제67조 및 제69조²⁾에 따르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형무소에 구치되어 작업(정역)에 복무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형자의 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하여 정역을 집행하고, 부수적으로는 해당 작업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7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수형자 중 미결수를 제외한 기결수 36,157명 중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분류된 작업부과 부적격자 11,191명을 제외한 적격자는 24,966명이고, 이 중 작업장 부족으로 작업장³⁾에 배정되지 못한 인원 4,126명 중 2,237명은 수용거실에서 교도작업(거실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889명은 작업장 부족으로 인하여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형법」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3) 작업장 배정자는 직영작업, 위탁작업, 노무작업, 운영지원작업 인력으로 구분된다.

- 직영작업: 교정시설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작업으로 목공, 봉제, 인쇄, 식품, 영농 등 24개 기관(69개 작업장)에서 수행
- 위탁작업: 외부업자로부터 기계 및 재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작업으로 쇼핑백, 자동차 부품조립, 문구류 조립 등 45개 기관(258개 작업장)에서 수행
- 노무작업: 민간기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작업으로 ①외부통근방식은 9개 기관(11개 작업장), ②개방지역작업은 24개 기관(46개 작업장)에서 수행
- 운영지원: 52개 교정시설 운영상 필수적인 취사, 세탁 등의 작업 수행

[수형자 정역 집행률 현황]

(단위: 명)

연도	총원 (기결수)	작업부과 부적격자	작업부과 적격자				정역 집행률 (C/A)
			계(A)	작업장 배정자 (C=A-B)	거실작업자	순수 미작업자 (B)	
2014년 말	32,867	9,085	23,782	21,471	2,010	2,311	90.3%
2015년 말	34,425	10,458	23,967	22,090	2,211	1,877	92.2%
2016년 말	36,082	12,154	23,928	22,100	2,399	1,828	92.4%
2017년 8월	36,157	11,191	24,966	23,077	2,237	1,889	92.4%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작업 부적격자를 제외한 수형자는 「형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00명의 인원이 부적합한 작업환경에 놓여 있거나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정 작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작업 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부족으로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식 작업장이 아닌 수용거실에서 수행하는 소위 ‘거실작업’의 경우에도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작업여건 상 주로 쇼팽백 제작 등의 단순작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출소 후 활용 가능한 기술 습득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일평균 2,000~3,000원의 낮은 작업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수형자들의 선호도 낮은 편이다.⁴⁾

따라서 법무부는 해당 인원(작업 미종사자 1,889명, 거실작업자 2,237명까지 포함 시 4,126명)의 교도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장을 확보하고, 나아가 출소 후 구직과 연계되는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⁵⁾

4) 참고로, 개방지역 작업을 수행하는 수형자 1명당 일평균 작업장려금은 14,000원이다.

5)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018년 교특회계 예산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취업유망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교도작업 발굴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주제: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 기간: 2018. 6.~11., 예산액: 1억 6,000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작업장 보완을 위하여 시설보완⁶⁾ 사업에 2016년 22억 1,500만원, 2017년 2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50억 8,200만원이 증액된 72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장 2개, 직업훈련연계 직영 작업장 1개, 취업유망 직업훈련장 2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1개 작업장에서 평균 50명의 수형자가 작업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작업 미종사자 1,800여명의 정역 집행을 위해서는 36개 이상의 작업장이 신설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취업연계형 교도작업장 등 기존의 단순 교도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6) 코드: 교도작업특별회계 1535-302

3-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세출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법무부는 수용자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교도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출소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특회계 재원으로 직업훈련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은 58억 2,6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1억 5,100만원(2.7%)이 증액되었다.

[2018년도 직업훈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직업훈련	2,925	5,675	5,675	5,826	151	2.7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과거 일반회계에서 실시하던 직업훈련(교정교화프로그램) 강사료 19억 2,200만원을 2017년부터 교특회계로 이관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출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법 제9조제2항제4호2)는 교특회계 세출항목으로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

1) 코드: 교도작업특별회계 1535-301

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영·관리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훈련을 위한 경비'를 명시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교특회계 재원으로 수용자의 집중인성교육과 취업, 창업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특회계는 기본적으로 교도작업에 종사하는 수용자(정역집행자)의 교도작업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을 다루는 회계이므로, 미작업 수용자를 포함한 전체 수용자에 대한 인성교육 및 직업훈련을 동 특별회계 재원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현재 수용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운영비는 일반회계, 강사료는 교특회계로 이원화³⁾되어 있어 집행상 비효율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최근 교도소 수용인원 급증에 따라 수형자 교화 및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므로, 전체 수형자의 교화와 관련된 경비는 일반회계로 재이관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 및 교특회계에 편성된 강사료 내역]

(단위: 백만원)

	2016년 예산(변경 전)		2017년 예산(변경 후)		2018년 예산안	
	교정교화 (일반회계)	직업훈련 (교특회계)	교정교화 (일반회계)	직업훈련 (교특회계)	교정교화 (일반회계)	직업훈련 (교특회계)
세부사업비(총액)	8,165	3,453	7,512	5,675	7,358	5,826
인성교육 강사료	2,058	0	0	1,922	0	1,922

주: 직업훈련(교특회계) 사업에 편성된 강사료 총액은 24억 7,700만원이지만, 위의 표에서는 2017년에 교정교화(일반회계) 사업에서 이관된 인성교육 강사료 19억 2,200만원만 표기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교정교화(일반회계 1532-301) 사업에 교육프로그램 장비 구입(13억 7,800만원), 학과 및 문화교육 운영비(5억 2,200만원) 등은 예전과 같이 편성하고, 강사료만 직업훈련(교특회계 1535-301) 사업으로 이관하였다.

3-3.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 조정 필요

가. 현 황

법무부는 공공자금예탁¹⁾ 사업을 통해 2018년 교특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1,299억 2,500만원 중 48.7%인 633억 3,500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다. 이는 교특회계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자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기금예탁에 따른 일정 이자수익을 얻는 형태로 교특회계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도 공공자금예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공자금예탁	34,855	43,642	43,642	63,335	19,693	45.1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교특회계의 공자기금 예탁 규모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탁금 비중을 줄이고 교특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특회계의 공자기금 예탁금은 2017년 예산액 436억 4,200만원에서 2018년 633억 3,500만원으로 45% 이상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교특회계에서 공자기금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42.7%(2017년 1,022억 1,300만원 중 436억 4,200만원)에서 2018년 48.7%로 증가하여 특별회계의 사업비 대비 공자기금 예탁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다.

국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상당 비율을 공자기금에 예탁하게 되면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사업 등 주요 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규모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 등의 사업에 대한

1) 코드: 교도작업특별회계 8910-890

적극적 집행이 곤란하므로 “교도작업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축소 필요”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를 한 바 있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교특회계의 주요 사업비를 과거 최대 증가율(전년 대비 13.8%)로 편성하는 등 개선노력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전체 재원의 1/2 가까이 공자기금으로 예탁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에도 공자기금 예탁규모를 줄여가는 한편, 교특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교도작업, 직업훈련 및 시설보완 사업에 재원을 추가 배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점검 필요 등

가. 현 황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¹⁾ 사업은 상사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선진법제포럼 개최, 중재산업 활성화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동 사업 예산안은 45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7,300만원(89.7%) 증액되었으며, 증액분 대부분은 내역사업인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소관부처 변경(산업통상자원부 → 법무부)에 따라 2016년부터 법무부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18년에는 37억 8,200만원이 편성되어 2017년 예산액 14억 9,100만원 대비 22억 9,100만원 증가하였다. 증액분은 대한상사중재원 보조금의 신규 내역인 ‘국제중재센터 운영(24억 1,000만원)’에서 발생하였다.

[2018년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2,690	2,423	2,423	4,596	2,173	89.7
중재산업 활성화	1,608	1,491	1,491	3,782	2,291	153.7
-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보조금	321	240	240	240	0	0
- 대한상사중재원 보조금	1,177	1,151	1,151	3,442	2,291	199.0
- 연구용역비(중재 및 기업 법제 선진화 관련)	110	100	100	100	0	0

자료: 법무부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3-304

[2017~2018년 대한상사중재원 보조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2017 예산	2018 예산안	증감
대한상사중재원 보조금	1,151	3,442	2,291
- 해외설명회	295	265	△30
- 국제중재 행사	90	64	△26
- 홍보컨텐츠 강화	100	136	36
- 국제중재 전문교육 강화	120	120	0
- 국제중재 유치 강화 및 해외관리인력 (해외데스크 운영 등)	516	333	△183
- 국내중재 설명회	30	114	84
- 국제중재센터 운영(신규)	0	2,410	순증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이 약 770m²,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는 약 433m² 규모로서 경쟁국인 홍콩 국제중재센터(1,500m²)나 싱가포르 맥스웰 체임버스(4,500m²)보다 협소하고 중재당사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미비하므로, 중재제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신규 구축(가칭 ‘국제중재센터’)하여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²⁾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 ‘국제중재센터 운영’ 보조금 24억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삼성동 무역센터 건물(현 대한상사중재원 입주 중)에 심리실, 국제중재인 및 외국중재기관 사무실, 통·번역 시설 등을 포함한 약 2,000m² 규모의 공간을 임차하여 2018년 1월부터 내부공사 후 3월부터 개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나. 분석의견

첫째, 법무부는 국제중재센터가 5년 내에 재정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므로, 향후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5년 내 재정자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센터 관련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2008년 설립)에 대해서도 향후 재정자립을 목표로 2011년부터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³⁾하였

2) 싱가포르 Maxwell Chambers는 2009년 싱가포르 법무부 지원으로 건립한 이후 국제중재사건을 3배 이상(2005년 74건→2015년 271건) 유치하였다.

3) 코드: 일반회계 1036-300(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으나, 현재까지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중재센터가 조속히 재정자립을 달성하여 국가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무부가 지난 2년간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해외데스크 설치 등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건수는 2016년 62건으로 전년(74건) 대비 16% 감소하였고, 최근 6년(2010년~2015년) 평균 국제중재 건수(75건) 및 건당 사건규모(37억원)보다 낮은 실적을 나타냈다.

홍보 및 교육 사업은 그 특성상 효과가 단기에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실적만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동 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건수 및 사건규모, 재정자립도, 법률서비스 분야의 국제무역수지 추이⁴⁾ 등의 지표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료 축적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연도별 국제중재 건수 및 사건규모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0~ 2015년 (연평균)	2016
국제중재 건수(A)	52	77	85	77	87	74	75	62
국제중재 사건규모(B)	822	2,678	7,739	1,698	2,504	2,758	3,033	2,114
1건당 사건규모(B/A)	16	35	91	22	29	37	37	34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둘째,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⁵⁾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320-01목)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므로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은 민간자본보조(320-07목)로 편성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동 사업 예산안 24억 1,000만원을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에는 동 센터의 신설과 관련된 시설관리예약 전산시스템 구축비 8,000만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비 6,360만원, 동시통역시설 구축비 4,000만원, 사무실 비품 1억 7,0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성격의 보조금은 민간자본보조(320-07목)로 편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4) 최근 5년(2012~2016년) 평균 법률서비스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는 약 7,299억원이다.

5)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4., p.336 및 p.338.

[국제중재센터 운영 사업 세부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임대보증금	650,000
임차료(27,084원×2,000m ² ×12월)	650,000
관리비(28,333,000원×12월)	340,000
시설비(175,000원×2,000m ²)	350,000
자산취득비 -시설관리·예약 전산시스템 구축(80,000) -화상회의시스템(60,000) -동시통역시설(40,000) -사무실 비품(170,000)	350,000
운영비 -운영위원회 및 국제중재위원회 회의수당(40,000) -시설관리·운영비(30,000)	70,000
합계	2,410,000

자료: 법무부

셋째, 국제중재센터 운영 보조금 중 운영위원회 및 국제중재위원회 회의수당으로 4,000만원이 편성⁶⁾되었는데, 이들의 법적 성격, 구성,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회의수당 편성 필요성 및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해당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2018년 설립 예정인 국제중재센터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건립·운영하는 대형 국제중재심사시설이므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설 설계·운영 및 국제 홍보계획을 수립·점검하고자 연 1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신설 예정인 국제중재위원회는 기존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운영 중이던 국제중재 관련 위원회들을 통합 개편하여 국제중재사건 관련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로 발족할 계획이며, 국제중재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재인 선정, 중재인 풀 구성, 중재사건 처리 프로세스 구축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중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연 8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 운영위원회 및 국제중재위원회의 설치 운영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⁷⁾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 회의수당 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6) 20만원×20명×10회=4,000만원

가. 현 황

법무부는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 등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형사보상 사업¹⁾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예산안에는 2017년 예산액과 동일한 275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형사보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형사보상	31,769	27,500	27,500	27,500	0	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형사보상 사업에 대하여 국회는 연례적인 본예산 과소 편성에 따른 예비비²⁾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으므로, 법무부는 지급 추이를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형사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형사보상 예산이 매년 예산액보다 초과집행되는 이유에 대하여 2009년 구 「도로법」 제84조 과적차량에 대한 양벌규정 위헌결정으로 이미 벌금을 납부한 법인들이 재심을 신청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무죄판결로 인해 고액 형사보상 청구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337-302

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서 생략)

형사보상 사업은 최근 5년간 매년 예비비를 사용한 사업³⁾으로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예비비 사용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018년 예산안에 2017년과 동일한 275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지급 평균액 567억 5,200만원, 2016년 결산액인 317억 6,9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며, 2017년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⁴⁾

특히, 형사보상금에 대해서도 국가배상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2017. 5. 30.)⁵⁾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형사보상금의 지급 지연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본예산에 적정 소요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형사보상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2	7,972	6,660	38,548	53,180	53,179	0	1
2013	11,000	0	46,672	57,672	57,672	0	0
2014	14,000	0	74,185	88,185	88,166	0	19
2015	20,000	5,200	27,775	52,975	52,975	0	0
2016	25,000	940	5,829	31,769	31,769	0	0
2017. 9.	27,500	0	-	27,500	27,500	-	-

자료: 법무부

- 3) 2016년 예비비 집행 사업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예비비가 집행된 사업은 국가안전보장활동경비(기획재정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가배상금 지급(법무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법무부: 2014년, 2015년, 2016년), 형사보상(법무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이고, 전 부처에서 5년 연속 예비비가 집행된 사업은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과 형사보상 사업이다.
- 4) 법무부는 2017년에도 형사보상 예산액 275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예비비를 신청하였고, 2017. 10. 17. 국무회의에서 형사보상금 예비비 62억 4,500만원 편성이 의결되었다.
- 5)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중략)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223411, 2015다245466 판결).

3-1. 공익법무관 기타운영비 편성 부적절

가. 현 황

법무부는 국가소송 수행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동 사업 예산안은 22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8,600만원(44.0%) 감액되었고, 감액분 대부분은 그간 1명당 월 30만원씩 인건비 보전 방식으로 지급되었던 공익법무관²⁾ 활동비(특정업무경비) 20억 2,000만원이 인건비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2018년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4,585	4,060	4,060	2,274	△1,786	△44.0
공익법무관 기타운영비	25	11	11	11	0	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공익법무관실 운영을 위하여 기타운영비(210-16목)로 과(課) 운영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 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

동 지침에 따르면, 과 운영비는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을 위한 현금성 경비³⁾이다. 그러나 공익법무관실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2) 공익법무관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 등에 배치되어 국가소송 등 법률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은 직제에 정식 반영된 조직이 아니므로, 일선 검찰청 등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이 별도의 사무공간(소위 ‘공익법무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직제에 반영된 보조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과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⁴⁾고 하였고, 검찰청 등에 배치된 공익법무관들은 통상 별도의 사무실(공익법무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과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침은 연도 중 발생하는 특이 소요(비직제 T/F 등)에 대하여 예외적인 집행 가능성을 규정한 것이므로, 편성 시에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과 운영비는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 형태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 과당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월 9만원, 6명 이상인 경우 월 18만원을 편성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4., pp.192~193 참고).

4)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7. 1., p.163.

3-2. 보호관찰소 임시조직의 조속한 직제 반영 필요

가. 현 황

법무부는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및 지역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총액)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동 사업 예산안은 46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5.3%) 증액되었으며, 이는 최저임금 보전분 등 사무보조원에 대한 처우개선분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동 사업의 기타운영비(210-16목)는 2017년과 동일한 3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타운영비는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인 과 운영비, 비서실운영비, 시험관리비, 직원에 대한 축·조의금, 격려금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현금성 경비이다²⁾.

[2018년도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 (총액)	4,142	4,369	4,369	4,601	232	5.3
기타운영비	387	382	382	382	0	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운영 기본경비로 직제상 122개 과에 대하여 월 18만원씩,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65개 과에 대하여 월 12만원씩의 과 운영비를 편성하였는데, 운영 실질에 맞도록 직제를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7018-209

2)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4., p.192.

보호관찰소는 2015년부터 비직제 과에 대한 과 운영비를 편성하였고, 2018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직원 격려금을 전년 대비 감액(4,107만원→2,487만원)하고 사실상 과 형태로 운영되는 비직제 조직에 대한 운영비를 현실화(7,020만원→9,360만원)하고자 하였다.

이는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이 2010년 1,224명, 2015년 1,507명, 2017년 1,54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2010~2017년 사이 총 320명 증가)한 것에 비하여 직제상 과 단위 보조기구는 2012년 4개, 2014년 3개, 2016년 2개 신설(총 9개 과 신설)된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³⁾. 이에 따라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직제상 과인 관찰과 예하에 관찰과(4명), 소년 보호관찰과(8명), 성인 보호관찰과(7명) 등 기능을 분화하여 사실상 3개 과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직제상으로는 1개 과(관찰과)만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비공식조직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무부는 직제를 현실화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 간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2017~2018년 보호관찰소 기타운영비 세부산출근거]

(단위: 천원)

내역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세부산출근거	금액	세부산출근거	금액
과 운영비	가. 6명이상(88개 팀, 5개 심사위, 27개 지소, 2개 관제센터) 122개과×180,000원×12월=	263,520	가. 6명이상(88개 팀, 5개 심사위, 27개 지소, 2개 관제센터) 122개과×180,000원×12월=	263,520
	나. 비직제과 지원 65개과×90,000원×12월=	70,200	나. 비직제과 지원 65개과×120,000원×12월=	93,600
직원 격려금 등	41,067,000원	41,067	24,867,000원	24,867
초빙강사 수당	7,200,000원	7,200		0
	소계	381,987	소계	381,987

자료: 법무부 「2017년도 예산 및 2018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기존 직제과 30개 + 26개 과 신설(2007. 7.) + 23개 과 신설(2008. 1.) + 4개 과 신설(2012. 3.) + 3개 과 신설(2014. 9.) + 2개 과 신설(2016. 3.) → 현재 직제상 87개 과 + 1개 센터(정보화)

가. 현 황

법무부는 국제형사협력지원(ODA)¹⁾ 사업에서 아세안국가에 대한 국제 마약퇴치 지원 사업, UNODC(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과건검사의 부담금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마약수사²⁾ 사업에서도 국내·외 마약사범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마약수사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에 수사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형사협력지원(ODA) 사업은 2017년과 동일한 7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마약 수사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1,400만원(11.4%)이 감액된 4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양 사업에서 외국 정부에 수사차량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8년도 외국 수사장비 지원 편성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사장비 지원내역	금액
국제형사협력지원 (ODA) (1333-303)	국제 마약퇴치 지원 (라오스)	1) 마약감식장비(이온스캐너) 1대×\$52,000	58,760
		2) 수사지원차량 2대×\$41,250=\$82,500	93,225
		3) 컴퓨터 30대×\$660=\$19,800	22,374
		4) 마약진단시약 3,000개×\$2.2=\$6,600	7,458
		5) 계수조정 5,149,000원	5,149
	개발도상국 범죄예방 등 지원(콜롬비아)	1) DNA분석장비 1세트×271,700,000원	271,700
		2) 분석 시약 5키트×\$5,710=\$28,550	32,262
		3) 계수조정 -132,980,000원	△132,980
	소계		357,948
마약수사 (1335-304)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 (APPIC) 운영 지원	1) 마약감식장비 1세트×45,000,000원	45,000
		2) 감시 및 채증장비 10대×2,500,000원	25,000
		3) 모바일 분석장비 1대×18,000,000원	18,000
		4) 기타 수사장비 8,556,000원	8,556
	소계		96,556

주: 각 내역사업에는 수사장비 지원 외 사업추진비, 임차료, 국외여비 등도 편성되어 있으나, 상기 표에는 수사장비 지원내역에 관한 금액만 표기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333-303

2) 코드: 일반회계 1335-304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두 개의 세부사업에서 외국 정부에 수사장비 및 수사차량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개발국의 마약퇴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구입 및 지원’이라는 점에서 추진방식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만 ODA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유·무상 개발원조 등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과 마약수사 사업을 통해 마약통제능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수사차량 및 장비를 지원하고, 현지 수사관 초청연수를 통해 수사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ODA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업은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사업과 국제형사협력지원(ODA) 사업 뿐이고, 마약수사 사업은 ODA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마약수사 사업의 일환으로 저개발국에 장비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이는 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APICC)³⁾ 회원국 간 결속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마약퇴치역량 향상을 통해 상호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저개발국에 대한 무상원조라는 점에서 국제형사협력지원 사업과 마약수사 사업 간 차이를 찾기 어렵다. 또한, ODA 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를 통하여 부처 간 유사·중복 여부 점검, 수원국 선정의 적정성 및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므로, 마약수사 사업의 무상원조 또한 ODA 사업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아시아·태평양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re for combating drug crimes)는 초국가 범죄인 마약류 범죄 대처에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아·태지역 회원국 간 마약류 범죄정보 공유·대응을 목적으로 2012년 한국 검찰이 주도하여 창설한 아세안국가 간 협력체로서 대검찰청 마약과에 사무국을 두고 회원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공조수사 및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 ODA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코드)	유형	2017 예산액	2018 예산안	세부내역
1	개발도상국법제 정비지원(ODA) (1332-305)	양자원조 (무상)	162	167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2	국제형사협력 지원(ODA) (1333-303)	양자원조 (무상) 및 다자원조	782	782	· 국제마약퇴치지원 ·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부담금 · 유엔범죄예방 형사사법지국 파견부담금 · 개발도상국 범죄 예방 및 퇴치 지원

자료: 법무부

가. 현 황

수사일반¹⁾ 사업은 검찰의 수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검사실의 원활한 수사 지원을 위하여 사무보조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²⁾.

법무부는 검찰 창설 이래 검사실은 검사, 수사관(검찰사무직), 실무관(舊 기능직, 現 사무운영직)의 3원 구조를 유지³⁾해 왔으나, 2008년 이후 검사 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사관 및 실무인력 증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검사 1명당 수사보조인력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2018년에는 사무보조원을 전년(275명) 대비 450명 증원하여 총 725명의 사무보조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상용임금 62억 2,0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8,000만원, 고용부담금 12억 2,200만원 등 총 76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2018년도 수사일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예산(A)	2018 예산안(B)	증감	
				B-A	(B-A)/A
수사일반	66,150	67,588	77,515	9,927	14.7
사무보조원 450명 증원분(신규)	0	0	7,622	순증	순증
상용임금(110-03목)	0	0	6,220	순증	순증
복리후생비(210-12목)	0	0	180	순증	순증
고용부담금(320-09목)	0	0	1,222	순증	순증

자료: 법무부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335-301

2) 2008년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검사실 사무보조를 담당하던 기능직공무원은 정원 동결과 함께 신규 채용이 금지되었고, 2013년 말 기능직률이 최종 폐지됨에 따라, 현재 검사실 실무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직 사무보조원 채용이 유일하다.

3) 검찰수사관 1~3명, 실무관 1명으로 검사실(팀)을 구성(경우에 따라 유관기관 파견직원 1~2명 추가)

나. 분석의견

첫째, 사무보조원(무기계약직) 인력 보강은 실질적인 수사종사인력 및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17년 현재 검사 정원이 2,182명이나, 사무운영직(舊 기능직) 및 사무보조원(계약직) 등 검사실 실무인력은 1,630명으로 검사 정원 대비 552명 부족하고, 2018년 증원되는 검사 70명까지 감안할 경우 검사 정원 대비 총 622명이 부족하게 되므로 2018년 예산안에 계약직 사무보조원 450명에 대한 인건비 등 6개월분을 신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검사정원법」 개정(2014. 12.)에 따라 2019년까지 연차별로 검사 정원이 총 350명 늘어날 예정이나, 2014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증원된 사무보조원은 80명으로 2017년까지 증원된 검사인력 240명의 1/3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 사무보조원을 450명 증원할 경우, 사무보조원의 누적 증원인원은 530명이 되므로 2020년까지 증원될 검사인원 350명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 폐지는 전 부처에 공통된 사안으로서 타 부처에서도 자연감소되는 예전 기능직 인원을 모두 계약직 사무보조원으로 대체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검사실에 대해서만 계속 이를 계약직으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4~2019년 검사 정원 증원 대비 실무인력 증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누계
검사 정원(A)	1,942	2,032	2,112	2,182	2,252	2,292	-
전년 대비(증감)	0	90	80	70	70	40	350
사무운영직(구 기능직)(B)	1,471	1,402	1,355	1,355	1,355	1,355	-
전년 대비(증감)	0	△69	△47	0	-	-	△116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C)	195	195	252	275	725	725	-
전년 대비(증감)	0	0	57	23	450	-	530
실무인력(D=B+C)	1,666	1,597	1,607	1,630	2,080	2,080	-
검사 대비 부족인원(D-A)	△276	△435	△505	△552	△172	△212	-
검사 1명당 실무인력 비율(D/A×100)	0.86	0.79	0.76	0.75	0.92	0.91	-

주: 사무운영직(舊 기능직)의 경우, 증원 없이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하여 소멸되는 직군으로, 2018년 도 이후 정원 변동 내역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역은 표기하지 않음

자료: 법무부

둘째, 검사실 사무보조원의 인건비 등(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이 3개의 세부 사업에 분리 편성되어 있으므로 통합적 관리 및 원활한 예·결산 심사를 위하여 단일 세부 사업에 편성하여야 한다.

검사실 보조인력인 사무보조원의 인건비 등(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은 지원내용이 동일함에도 검찰수사지원, 수사일반,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에 분리 편성되어 있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동일한 성격의 경비가 기본경비(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와 사업비(1335 수사 지원 및 역량 강화)로 구분되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를 단일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검사실 사무보조원 인건비 등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코드)	2017 예산(A)	2018 예산안(B)	증감	
			B-A	(B-A)/A
검찰수사지원(1335-300)	20,027	20,127	100	0.5
사무보조원 상용임금	2,284	2,422	138	6.0
사무보조원 복리후생비	35	35	0	0.0
사무보조원 고용부담금	246	450	204	82.9
수사일반(1335-301)	67,588	77,515	9,927	14.7
사무보조원 상용임금	1,787	8,942	7,155	400.4
사무보조원 복리후생비	32	212	180	562.5
사무보조원 고용부담금	192	1,663	1,471	766.2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7018-202)	31,381	34,135	2,754	8.8
사무보조원 상용임금	2,446	2,613	167	6.8
사무보조원 복리후생비	43	43	0	0.0
사무보조원 고용부담금	263	486	223	84.8

자료: 법무부

가. 현 황

임차료(210-07목)는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를 집행하기 위한 비목이다. 법무부의 회의장 등 임차료는 법무활동 프로그램(법무실 소관)에 집중 편성되어 있으며, 법무활동 프로그램의 2018년도 예산안에는 각 세부사업별 임차료를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

[2018년도 법무활동 프로그램 임차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가송무수행및공익법무관 운영	4,585	4,060	4,060	2,274	△1,786	△44.0
송무담당공익법무관워크숍	9	12	12	12	-	-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1,326	1,244	1,244	1,144	△100	△8.0
UNCITRAL 국제세미나 등	31	44	44	44	-	-
개발도상국법제정비지원	163	162	162	167	5	3.1
현지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6	3	3	3	-	-
기업환경지수 개선	260	331	331	298	△33	△10.0
국제세미나 개최 등	37	61	61	28	△33	△54.1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1,316	1,290	1,290	1,165	△125	△10.0
법제개선 워크숍 등	71	91	91	86	△5	△5.5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 선진화	2,690	2,423	2,423	4,596	2,173	89.7
기업법제개선관련 공청회 등	62	31	31	25	△6	△19.4
변호사시험및법조윤리시험관리	4,219	3,738	3,738	3,190	△548	△14.7
시험장 임차료	590	513	513	367	△146	△28.5
변호사제도의선진화	1,300	1,085	1,085	2,332	1,247	114.9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등	4	17	17	17	-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387	564	564	504	△60	△10.6
통일대비 워크숍 등	5	10	10	10	-	-

자료: 법무부

채미강 예산분석관(river@assembly.go.kr, 788-4640)

나. 분석의견

첫째, 법무부는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사업¹⁾에서 법령 제·개정을 위한 회의²⁾를 개최하면서 외부 사무실을 상시 임차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민법개정위원회 등 법무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려는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건물(오피런스)을 연중 상시 대관하여 2016년 2월부터 매월 574만 7,500원씩 총 6,322만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무부 본부(경기도 정부과천청사)의 접근성이 높지 않아 외부위원의 참석이 쉽지 않으므로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을 별도 임차한 것이며, 연간 공식적인 위원회 및 T/F 회의 개최횟수가 45회에 달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한 회의실 사용 등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회 가까이 해당 공간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법령 제·개정을 위한 내부회의를 개최하면서 접근이 용이한 외부 사무실을 상시 임차할 필요성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이를 허용할 경우 세종시 등에 위치한 타 부처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무부의 각종 회의장 임차료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호텔 임차료 등 절감 가능한 집행내역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각 세부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³⁾

그러나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법무부의 각종 회의장소 임차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호텔 등에 집중되어 있고, 회의의 성격은 T/F팀 과장급 회의, 법무협력관 업무보고 회의, 변호사 업무 관련 회의, 법안 간담회, 정부기관 간 워크숍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차료(210-07목)를 호텔 등 요식업장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장소에 대한 임차료에 식대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집행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집행 사례로 보기 어렵다.

1) 코드: 일반회계 1033-300

2)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T/F, 채권추심법 개정 T/F,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 T/F,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알기 쉬운 민법 개정 T/F,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T/F, 후견제도 활성화 T/F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들 위원회 등의 주요 목적은 법무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 논의를 위한 것으로서 외부위원은 대부분 교수, 변호사,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7. 4., p.18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각종 회의에 수반되는 임차료를 관행적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시 각 세부사업의 불필요한 임차료를 감액하여 기획재정부의 편성지침 및 정부 시책에 맞는 집행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16년 각종 회의장 임차료 집행내역]

세부사업명	일자	지출내역(임차목적)	장소	금액(원)	비고 (2018년 편성내역)
국제거래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032-300)	2016-04-14	국제거래법연구단 회의 관련 회의장 임차	리츠칼튼 호텔	2,202,350	임차료 4,400만원 (전년동)
	2016-10-27	UNCITRAL 아태지역센터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한화호텔 앤드리조트	5,000,000	
	2016-12-21	법률문화교류 국제세미나 관련 법무협력관 업무보고 회의 실무자 간담회	서울팔래스 호텔	1,314,000	
	소 계			8,516,350	
국제투자 분쟁중재 수행및대응 (1032-306)	2016-07-06	론스타 분쟁 실무자회의 대관료 지급	엘타워	1,104,400	2017년 사업종료 (순감)
	2016-11-16	론스타 관계부처 TF 과장급 회의 개최 관련 회의장 임차	반포원	790,000	
	2016-12-28	국제투자분쟁 관련 외부 전문가 회의 개최	서울팔래스 호텔	869,000	
	소 계			2,763,400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1033-300)	2016-11-10	개정 공익법인법 간담회 관련	엘타워	2,200,000	임차료 8,100만원 (500만원 감)
	2016-12-28	청년법제포럼 개최 관련	엘타워	3,227,400	2017년 사업종료 (순감)
	소 계			5,427,400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1038-303)	2016-12-29	변호사업무관련 회의 경비 (장소 대여료 등)	리츠칼튼 호텔	1,600,000	임차료 1,700만원 (전년동)
	소 계			1,600,000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1041-300)	2016-12-12	임차료 지급 (통일대비 워크숍 관련)	엘타워	1,621,400	임차료 1,000만원 (전년동)
	2016-12-20	임차료 지급요청 (통일법제 공동학술대회 워크숍)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2,998,800	
	소 계			4,620,200	

주: 비교에는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해당 세부사업의 임차료(210-07목)와 2017년 대비 증감 여부를 표기하였고, 해당 금액에는 장소 임차료 뿐만 아니라 차량 임차료 등도 포함되어 있음.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황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¹⁾ 사업은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2²⁾에 근거한 국고보조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00만원 감액된 4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정부법무공단운영지원	486	462	462	439	△23	△5.0

자료: 법무부

나. 분석의견

공단의 가용자금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충당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소송대리의 수행을 통하여 매년 소송의 진행에 따라 혹은 소송 완료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공단의 주된 수익인 소송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착수금은 16억 3,900만원(29.4%), 성공보수는 4억 5,600만원(15.6%) 증가하였다.

이은경 예산분석관(cunkylee@assembly.go.kr, 788-4682)

1) 코드: 일반회계 1036-300

2)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2(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부법무공단 사업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A)	2014	2015	2016(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착수금	5,582	6,559	6,894	7,222	1,639	29.4
성공보수	2,920	2,912	3,516	3,375	456	15.6
수수료	664	840	1,026	1,043	379	57.1
기타사업수익	210	48	311	82	△128	△61.0
사업수익 합계	9,375	10,359	11,747	11,722	2,346	25.0

자료: 정부법무공단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된 사업수익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은 4억 9,100만원~10억 8,300만원으로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당기순이익	578	833	1,083	491

자료: 정부법무공단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단의 당좌자산은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으로 인하여 최근 4년 동안 19억 4,400만원(37.9%) 증가하였다. 현금성자산이 10억 2,500만원(76.5%), 단기금융상품이 12억 700만원(36.7%) 증가하였다. 공단의 현금성자산은 대부분 수익증권으로, 단기금융상품은 6개월 혹은 1년 정기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2016년 현재 당좌자산이 70억 7,200만원이며, 총자산 84억 2,000만원의 84.0%에 해당한다.

[정부법무공단 당좌자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a)	2014	2015	2016(b)	증감액 (c=b-a)	증감률 (c/a)
현금성자산(a)	1,340	1,509	1,913	2,365	1,025	76.5
단기금융상품(b)	3,293	3,692	4,352	4,500	1,207	36.7
당좌자산(c=a+b)	5,128	5,553	6,461	7,072	1,944	37.9
당좌자산/총자산	87.0	80.6	80.5	84.0		

자료: 정부법무공단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공단은 소송대리업무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충분히 충당 가능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운용할 정도로 여유자금이 풍부한 기관이다. 통상적으로 기관들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연금운용자산을 운용하지만, 공단은 이를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단은 2016년에 퇴직급여충당부채 전액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1억 1,000만원을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부법무공단 퇴직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퇴직급여충당부채 해당분	1,828	2,336	2,811	3,622
추가 설정분	0	46	255	110
합계	1,828	2,382	3,066	3,732

자료: 정부법무공단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공단의 가용자금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

1

현 황

2018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세입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고, 세출예산안(총계 기준)은 2017년 대비 10억 7,300만원(3.3%) 증액된 332억 8,800만원이다. 총지출은 세출예산안과 동일하다.

[2018년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0,505	32,215	32,215	33,288	1,073	3.3

주: 총계 기준

자료: 법제처

2018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종전에 16개 유사·소액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던 사회복지무요원운용(총액) 사업 및 각 실·국별 기본경비(총액) 사업, 사회복지무요원운용 사업 및 각 실·국별 기본경비 사업을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과목구조개편 작업에 따라 각각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사업 및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으로 통·폐합하여 편성하였다. ② 2019년도 법제교육원 개원에 대비하여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 인력육성 사업을 2018년도 중점추진사업으로 정하고 전문적·체계적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전문교육 기본교재 개발 및 사이버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예산을 2017년 대비 1억 6,000만원(16.3%) 증액 편성하였다.

2018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기관운영기본경비를 통합하여 편성하는 경우 집행의 효율성과 신축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내역변경 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각 실·국별 기본경비를 내역사업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에서 실시하는 법제전문교육의 경우 법제교육과 소속 강사의 강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강사수당이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므로 연도별 강의 계획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사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은 기관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¹⁾와 기관운영기본경비²⁾로 구분된다.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의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2,300만원이 증액된 13억 500만원이며, 기관운영기본경비는 11억 1,100만원 증액된 22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634	682	682	1,305	623	91.3
기관운영기본경비	1,028	1,113	1,113	2,224	1,111	99.8

자료: 법제처

법제처의 기관운영기본경비가 상당부분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2017년까지 실·국별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16개 사업이 2개로 통합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감안한 2018년 기관운영기본경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800만원(2.6%) 증액되었다.

나. 분석의견

기관운영기본경비를 통합하여 편성하는 경우 집행의 효율성과 신축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내역변경 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각 실·국별 기본경비를 내역사업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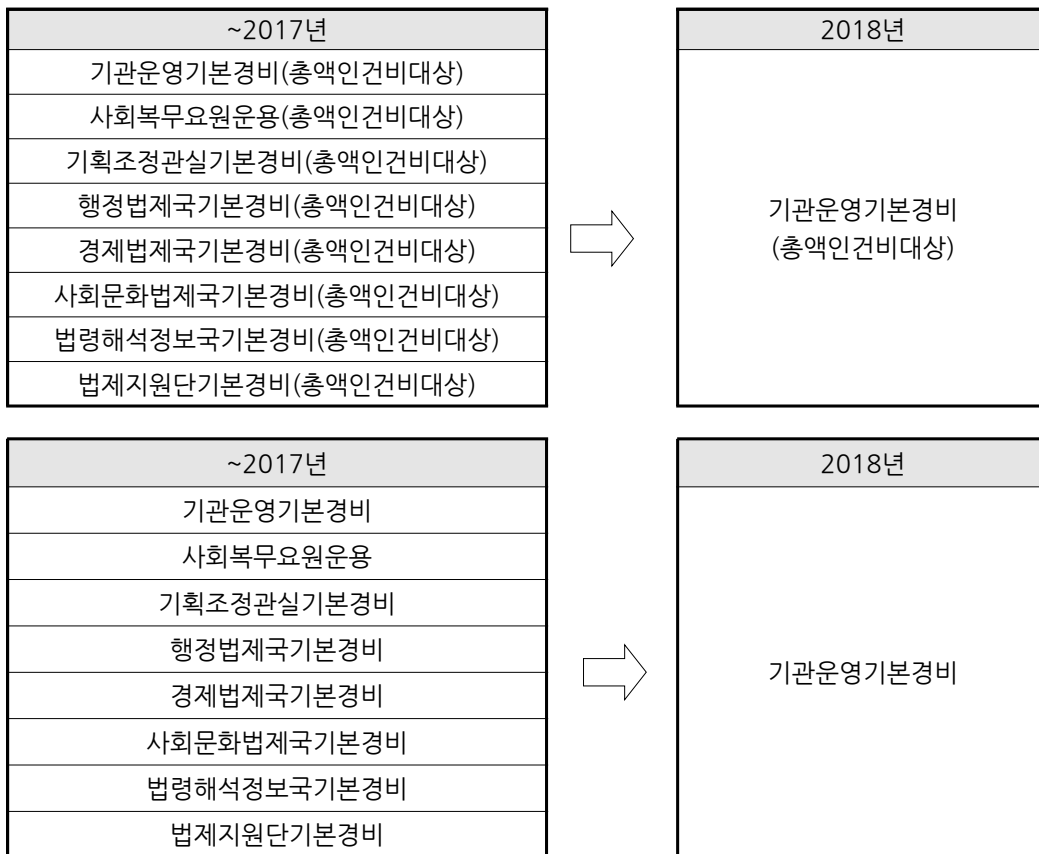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7011-200

2) 코드: 일반회계 7011-250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는 사회복지무요원운용(총액인건비대상), 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통합한 것이며, 기관운영기본경비는 행정법제국기본경비, 경제법제국기본경비 등 8개 세부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법제처 기관운영기본경비 통합 현황]



자료: 법제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에 대해 법제처는 2017년 기관운영기본경비 예산은 34억 4,000만원으로 법제처 전체 예산 322억 1,000만원의 10.7%에 불과하나, 16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 법제처 전체 사업 수(26개)의 61.5%를 차지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소액사업 통폐합에 따른 과목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법제처와 예산규모가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이미 기본경비가 통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관운영기본경비를 통합하는 경우 집행의 효율성과 신축성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통합 편성에 따른 투명성 저하 우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통합 이전에는 실·국간 기본경비 내 동일 세목 간 조정 시 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나, 통합 이후에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³⁾

따라서 기관운영기본경비의 통합에 따른 투명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실·국별 기본경비를 통합된 세부사업 내에서 내역사업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법제처는 2014년 1,700만원, 2015년 6,500만원, 2016년 3,400만원을 각각 기관운영기본경비 내에서 세목 간 조정하였는데, 기관운영기본경비를 통합 편성하는 경우 결산 심사 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남북법제 관련 국외출장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남북법제 사업은 통일에 대비하여 분야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0만원 감소한 1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사유는 2017년 추진된 남북법제 DB관련 용역사업(4,000만원)이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도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세계법제정보서비스	501	598	598	580	△18	△3.0
남북법제	140	176	176	136	△40	△22.7

자료: 법제처

나. 분석의견

남북법제 사업 내 국외출장 주제 선정 시 세미나와 연구용역 등의 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국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해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운영, 세미나 개최, 정책연구, 국외출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031-301

[남북법제 관련 주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안)
정책연구	80.0	80.0
세미나	9.7	9.7
국외출장	7.6	7.6
연구위원회	26.3	26.3

자료: 법제처

그런데 해당사업 내 국외업무출장은 연구용역, 세미나 등으로 일부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후 법제처가 수행한 국외출장 내용을 살펴보면 체제전환국의 분야별 법제 및 통합헌법 등에 관한 연구인데, 이는 법제처가 추진한 세미나·연구용역 등의 주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실제 법제처에서 2016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인 「남북한 외교분야 법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의 주요내용에는 ‘독일 등 분단통합국의 조약처리 사례연구 및 협상과정에서의 적용 시사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는 ‘체제전환국의 법제정비 동향과 과제’와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세미나 과정에서도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제처는 출장국과 출장주제의 선정 시 그간 수행한 세미나와 연구용역 등의 주제와 유사한 주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제처는 매년 연초에 국외출장 국가와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베트남·홍콩의 노동법, 체코·헝가리의 보건복지 법제 등 해당국가와 주제가 어떠한 이유로 선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국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남북법제 연구관련 국외출장 국가 및 주제(2013~2016년)]

연도	국가	주제
2013	베트남·홍콩	체제전환국 등의 노동법 관련 연구
2014	독일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통합헌법에 관한 연구
2015	체코·헝가리	체제전환국의 보건복지 법제 연구
2016	독일·폴란드	체제전환국의 경제 분야 법제 연구

자료: 법제처

가. 현 황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¹⁾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법규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1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법제교육 강사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1억 7,400만원이다.

[2018년도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034	984	984	1,144	160	16.3
법제교육 강사수당	158	174	174	174	0	0
법제교육 교재 고도화 등	32	32	32	185	153	478.1

자료: 법제처

동 사업 예산안이 증액된 것은 2019년 법제교육원²⁾의 개원에 따라 공무원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의 고도화와 법제 일반 및 전문분야별(국토·주택·보건·계약 등) 기본교재 개발을 위한 사업이 반영된 것에 기인한다.

나. 분석의견

법제교육과 소속 강사의 강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강사수당이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으므로 연도별 강의 계획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사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034-300

2) 법제처는 법제교육 강의, 교육과정 및 강의기법 개발, 평가 등을 전담하는 독립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교육원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안면도)'에 입주할 예정이며, 동 연수원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개발하고 있다.

법제처는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법제교육강의를 수행하는 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³⁾하고 있으나, 최근 강사수당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강사수당 예산액, 집행액 및 불용액 현황(2013~2017년 7월)]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13	125,240	125,240	0
2014	160,480	137,350	23,130
2015	174,780	158,150	16,630
2016	181,730	155,640	26,090
2017.7.	173,540	89,900	-

자료: 법제처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제교육과 소속 직원은 강의가 고유업무이므로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전체 강의 중 법제교육과 소속이 아닌 직원(내부강사)의 강의 비중이 높다는 판단 하에 해당 인원들의 강의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⁴⁾ 실제 2013년 대비 2016년 법제교육과 소속 직원의 강의횟수가 67회에서 297회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수당 지급 현황(2013년~2017년 7월)]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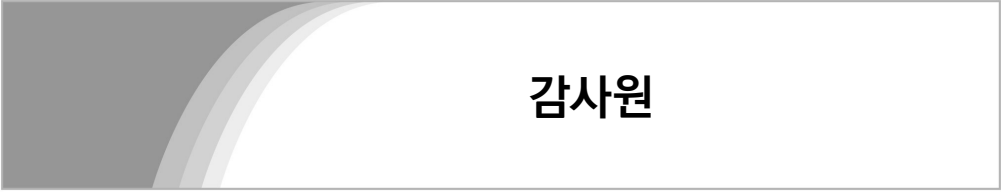
구분	강사수당 미지급	강사수당 지급		합계
	법제교육과	내부강사	외부강사	
2013	67(11.0%)	493	47	607
2014	100(14.6%)	414	172	686
2015	243(29.9%)	295	274	812
2016	297(32.6%)	296	319	912
2017.7.	212(35.8%)	188	193	593

자료: 법제처

3) 강사수당은 1시간 기준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4) 2016년부터는 일반 직원의 강의 횟수(과장급 연 6회, 사무관 연 12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제교육과 소속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강사활용 방식이 변경되어 강사수당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처는 연도별 강의 계획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

1

현 황

2018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4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1.8%) 증가하였다. 감사원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60	440	440	448	8	1.8

주: 총계 기준

자료: 감사원

2018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1,301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4,300만원 (3.9%) 증가하였다. 감사원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6,329	125,187	125,187	130,130	4,943	3.9

주: 총계 기준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검사, 국가기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행정기관 사무와 공무원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8년도 예산안은 ①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경비 절감 및 절감재원의 신규 소요 재원으로의 활용 ② 헌법 및 법률이 부여한 감사업무 수행경비와 감사의 전문성·공정성·민주성 강화를 위한 경비의 적극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18년도 감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감사권익보호관 운영을 위해 편성된 자문료는 과거 감사권익보호관의 소명자료 검토실적을 고려하여 편성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감사권익보호관 자문소요를 고려한 자문료 편성 필요

가. 현 황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사업은 감사권익보호관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사활동경비¹⁾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이며, 2018년 예산안은 1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감사활동경비	22,133	23,074	23,074	23,198	124	0.5
감사권익보호관 운영	0	0	0	108	108	-

자료: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는 감사의 이해관계자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제출하는 소명 자료를 검토·지원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감사원은 2015년 9월 1일 동 제도를 시범도입하면서, 정부법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감사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하였는데, 2018년부터는 본사업으로 편성하여 소명자료에 관한 검토 자문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과거 감사권익보호관의 소명자료 검토 실적을 고려하여 감사권익보호관 자문료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hslee@assembly.go.kr, 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3

감사원은 2018년도 감사권익보호관 자문료 예산안을 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자문료 단가를 건당 30만원으로 보고, 연간 360건의 자문이 실시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2016년 감사권익보호관 자문실적은 150건이며, 2017년 자문실적은 7월말 기준 80건이므로, 2018년 자문실적으로 360건을 예상하는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

[감사권익보호관 소명자료 검토 실적]

(단위: 건)

2015. 9. ~ 12.	2016. 1. ~ 12.	2017. 1. ~ 7.	계
51	150	80	281

자료: 감사원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시행 이후 소명자료 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 관련 시정요구 사건은 감사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소명제도를 안내하는 것으로 절차를 변경(2017. 2.)함에 따라 관련 소명자료 제출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소명자료 접수건수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360건은 예년 수준의 2배를 상회하는 수치이며, 최근 3년 간(2014~2016년) 조세 관련 시정요구 사건은 연 평균 55건으로 소명자료 접수건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감사원은 실제 자문 소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권익보호관의 자문료를 일률적으로 건당 30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자문의 난이도는 각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안의 난이도 등에 따른 자문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2018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2018년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은 9,218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5억 8,600만원 (11.0%)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260억 6,200만원, 등기특별회계 3,433억 8,200만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24억 200만원이다.

[2018년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37,184	783,699	783,699	869,444	85,745	10.9
- 일반회계	378,538	480,727	480,727	526,062	45,335	9.4
- 등기특별회계	258,646	302,972	302,972	343,382	40,410	13.3
기 금	53,517	46,561	46,561	52,402	5,841	12.5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3,517	46,561	46,561	52,402	5,841	12.5
합 계	690,701	830,260	830,260	921,846	91,586	11.0

주: 총수입 기준

자료: 대법원

2018년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은 1조 8,225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8억 2,400만원 (4.7%)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5,520억 8,900만원, 등기특별회계 2,220억 2,800만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483억 9,700만원이다.

[2018년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599,814	1,696,124	1,696,124	1,774,117	77,993	4.6
- 일반회계	1,396,681	1,481,728	1,481,728	1,552,089	70,361	4.7
- 등기특별회계	203,133	214,396	214,396	222,028	7,632	3.5
기 금	48,342	44,566	44,566	48,397	3,831	8.6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48,342	44,566	44,566	48,397	3,831	8.6
합 계	1,648,156	1,740,690	1,740,690	1,822,514	81,824	4.7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대법원

나. 세입·세출

2018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은 1조 154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4억 7,400만원(13.2%)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5,750억 3,000만원에서 2018년 6,512억 200만원으로 13.2% 증가하였으며, 등기특별회계는 2017년 3,219억 7,200만원에서 3,642억 7,400만원으로 13.1% 증가하였다.

[2018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18,538	575,030	575,030	651,202	76,172	13.2
등기특별회계	282,057	321,972	321,972	364,274	42,302	13.1
합 계	700,595	897,002	897,002	1,015,476	118,474	13.2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2018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1조 9,163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6억 6,300만원(6.2%)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2017년 1조 4,817억 2,800만원에서 2018년 1조 5,520억 8,900만원으로 4.7% 증가하였으며, 등기특별회계는 3,219억 7,200만원에서 3,642억 7,400만원으로 13.1% 증가하였다.

[2018년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96,681	1,481,728	1,481,728	1,552,089	70,361	4.7
등기특별회계	253,943	321,972	321,972	364,274	42,302	13.1
합 계	1,650,624	1,803,700	1,803,700	1,916,363	112,663	6.2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다.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대법원 소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수입계획안은 583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3,600만원(15.5%) 증가하였다.

[2018년도 대법원 기금수입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3,818	50,500	50,500	58,336	7,836	15.5
합 계	53,818	50,500	50,500	58,336	7,836	15.5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2018년도 대법원 소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지출계획안은 583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3,600만원(15.5%) 증가하였다.

[2018년도 대법원 기금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3,818	50,500	50,500	58,336	7,836	15.5
합 계	53,818	50,500	50,500	58,336	7,836	15.5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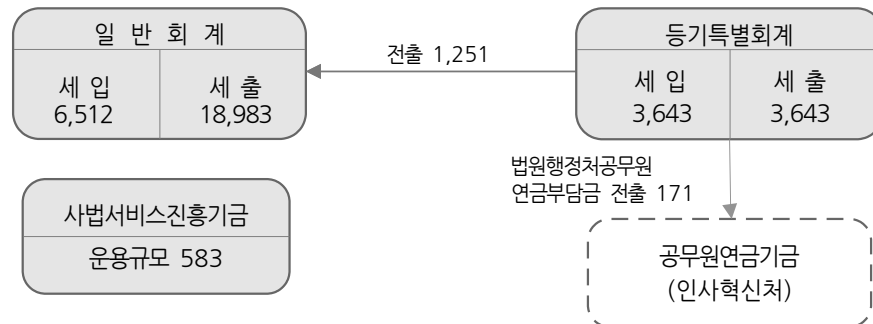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18년도 대법원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로서 등기특별회계 여유자금 1,251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며, 회계·기금 간 거래로서 등기특별회계는 법원행정처공무원의 연금부담금 171억원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전출한다.

[2018년도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등기특별회계의 등기빅데이터시스템구축 1개이다. 등기빅데이터시스템구축 사업은 국가기관의 정형·비정형 등기정보 요청에 적시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유형·방식의 등기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등기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법원 2018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18 예산안
등기특별회계 (1개)	등기빅데이터시스템구축	3,460

자료: 대법원

2018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소송구조지원 사업 1개이다. 소송구조지원 사업은 자금 능력이 부족한 소송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하였다.

[대법원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1개)	소송구조지원	4,560	4,560	6,022	1,462	32.1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대법원

대법원 소관 2018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공정한 재판 운영을 위하여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를 도입하였고, ②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 지원을 위한 우선지원창구 확대 설치로 사법지원을 확대하였으며, ③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확대를 위한 회생·파산 절차지원 및 소송구조 지원을 강화하였고, ④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사법정보 제공서비스의 체계화·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판결서 등에 대한 지능형 비식별화 시스템 구축 및 등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비용을 편성하였다.

2018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 예산안의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에 대한 일당 및 여비가 실제 소요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납액에 기반하여 세입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편성목적과 집행실적을 고려할 때 등기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 및 여비의 적정 예산편성 필요

가. 현 황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사업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및 배심원 일당·여비 지급 사업으로 법정중심재판운영¹⁾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2018년도 예산안은 28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국민참여재판에 선정된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일당 및 여비 등 경비는 13억 7,000만원이다.

[2018년도 국민참여재판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법정중심재판운영	41,460	22,122	22,122	21,474	△648	△2.9
국민참여재판 운영 등	2,221	2,893	2,893	2,893	0	0.0
배심원 일당 및 여비 등	미집계	1,370	1,370	1,370	0	0.0

주: 대법원은 배심원 일당 및 여비 집행액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2016년 결산액을 표기하지 않음
자료: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되었다. 근거법률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며,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규정되어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43-403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있는데,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배제결정을 내린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말까지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총 1,972건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이후 연도별 실시 건수]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실시건수	64	95	162	253	274	345	271	203	305	1,972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최근 국민참여재판 건수 및 배심원·예비배심원·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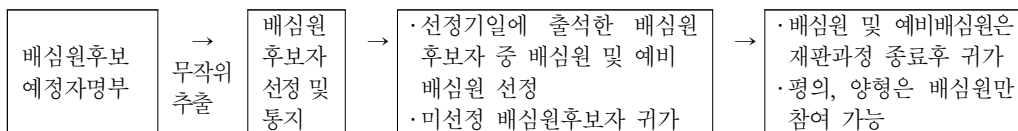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3)의 일당 및 여비 등의 2018년도 예산으로 배심원 후보자 지급소요 5억 4,700만원,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지급소요 8억 2,300만원 등 1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3)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 및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지방법원장은 주민등록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배심원후보자는 명부에서 무작위추출하여 선정하는데 현재 법원은 배심원후보자 출석률(2016년 기준 약 26.1%)을 감안하여 다수의 후보자(2016년 1건당 평균 소환인원 120.5명)를 선정하고 있다.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은 선정기일(현재 공판기일과 같은 날에 진행)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가운데 검사와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예비배심원은 배심원의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선정되는데, 5명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으나 통상 1명이 선정되고 있으며, 평의 및 양형에는 참여할 수 없다.

[2018년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등 일당·여비 등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예산액
배심원후보자		6만원(일당 및 여비) x 147명(배심원후보자 소환인원) x 27.7%(출석률) x 304건	547
배심원 및 예비 배심원	일당 및 여비	12만원(일당 및 여비) x 10명(배심원 수) x 1.5(참석일수) x 304건	743
	식비	7천원(점심) x 1.5일(참석일수) x 10명(배심원 수) x 304건	32
	격리수당	10만원(격리수당) x 10명(배심원 수) x 30건(진행건수의 10%)	30
	숙박료	6만원(숙박비) x 10명(배심원 수) x 30건(진행건수의 10%) x 1일	18
	소계		823
계			1,370

주: 배심원후보자, 배심원, 예비배심원에게 지급되는 일당 및 여비 기준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됨

자료: 대법원

그러나 이러한 산출근거는 2016년 국민참여재판 건수, 배심원 수, 출석률 등을 고려할 때 실제소요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등의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대법원은 배심원후보자 소환인원 수를 재판 1건당 147명으로 산정하고 출석률을 27.7%로 보아 재판 1건 당 약 40.7명의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2016년 평균 배심원후보자 소환인원 수는 120.5명이고 출석률은 26.1%로서 재판 1건당 배심원후보자의 평균 출석인원수는 31.5명이다. 아울러 배심원후보자 가운데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이 선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6만원의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는 평균적인 배심원 후보자 수는 약 8~9명이 더 줄어든 20여 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대법원은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를 10명으로 산정하였으나, 2016년 실시된 국민참여재판 305건 중 249건은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하였으며, 이에 예비배심원 1~2명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더라도 평균 10명의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6년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수에 따른 사건 수 및 배심원후보자 출석 현황]

(단위: 건, 명)

배심원 수	사건 수	배심원후보자		
		평균 소환인원 수	평균 출석인원 수	출석률
5명	9	92.2	26.8	29.1%
7명	249	117.6	29.9	25.4%
9명	47	141.4	40.6	28.7%
소계	305	120.5	31.5	26.1%

주: 국민참여재판은 법정형에 따라 배심원 수가 다른데,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경우 9명, 그 외의 대상사건은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할 때에는 5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자료: 대법원

다음으로 일당 및 여비, 식비의 경우 참석일수를 1.5일로 산정하였으나, 2016년 국민참여재판 305건 중 266건이 하루 만에 종료되었으므로,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국민참여재판 소요일]

(단위: 건)

재판 기간	1일	2일	3일	계
사건 수	266(87.2%)	37(12.1%)	2(0.7%)	305(100.0%)

자료: 대법원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내실화·활성화를 위해 2~3일 이상 연속 개정을 통하여 배심원의 피로도를 덜어주고, 배심원에게 사건에 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 활동을 2일 이상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평균 참석일을 1.5일 수준까지 제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국민참여재판의 10%의 사건에 대해 격리수당⁴⁾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는데에는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격리수당은 안전, 또는 심리·평의를 위해 (예비)배심원에게 격리조치가 취해질 때 지급되는 수당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은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2018년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예비배심원, 배심원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일당 및 여비 관련 예산은 실제 소요에 맞게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일당 및 여비 등 수당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집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관련 자료를 정비하여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2018년도 대법원 소관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423억 200만원 증가한 3,642억 7,400만원이다. 이는 등기부 발급·열람·신청 수수료로 수납되는 “면허료 및 수수료” 증액에 의한 것이다. “면허료 및 수수료”의 세입규모는 3,313억 4,7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91.0%를 차지한다.

[2018년도 등기특별회계 주요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년 결산액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특별회계 세입 총계	282,057	321,972	364,274	42,302	13.1
면허료 및 수수료	248,260	291,430	331,347	39,917	13.7
기타	33,797	30,542	32,927	2,385	7.8

주: 기타는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을 포함한 것임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면허료 및 수수료”의 세입예산안은 최근 수납액과 비교할 때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예산안은 2017년보다 13.7% 증가한 3,313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최근 면허료 및 수수료의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은 2,255~2,787억원으로 3,000억원을 초과하여 수납된 사례가 없고, 2017년 6월 기준 수납액도 985억 3,800만원으로 예산 대비 33.8%만 수납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8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편성 과정에서 최근 연도인 2016년도 수납액이 아닌 2015년도 수납액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도는 최근 5년 내 연도별 수납액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해이다. 2015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은 2,787억원으로 2013, 2014, 2016년에 비해 약 10% 이상 많았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연도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구분	세입예산(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2013	251,685	225,556	225,556	89.6
2014	274,336	239,593	239,593	87.3
2015	282,570	278,736	278,736	98.6
2016	291,040	248,256	248,256	85.3
2017 (6월 기준)	291,427	98,538	98,538	33.8
2018(안)	331,344	-	-	-

자료: 대법원

이처럼 과거 수납실적 및 산출근거를 고려할 때, 2018년도 등기특별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은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 과다편성은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등기특별회계 잉여금은 「등기특별회계법」 제5조¹⁾ 단서 조항에 따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고,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는 매년 등기특별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의 면허료 및 수수료 추계를 현실화하여 적정한 세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1) 「등기특별회계법」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가. 현 황

등기특별회계 예비비¹⁾는 등기업무에 있어 예측치 못한 긴급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며, 2018년도 등기특별회계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10억원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A)	2018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예비비	0	1,000	1,000	0	-

자료: 대법원

나. 분석의견

등기특별회계 예비비는 과거 집행실적이 없으며, 등기사업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집행 될 예산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예비비 편성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1994년 등기특별회계가 신설된 이후 매년 예비비를 편성해왔으나, 2017년 현재까지 예비비가 집행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에는 2017년과 동일한 1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매년 불용되는 예비비의 편성 필요성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액	18,110	13,144	13,438	7,323	4,987	2,500	2,271	4,869	1,000	1,000

자료: 대법원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등기특별회계 1139-521

등기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 목적은 등기업무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 예측치 못한 긴급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예비비의 용도는 새로운 정책수요나 재해대책, 환차손 보전 등으로서 등기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7년 현재 운용 중인 19개 특별회계 중 예비비를 편성한 특별회계는 등기특별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법무부 소관, 4억 7,500만원)로 2개이며, 2018년도 예산안에 예비비를 편성한 특별회계는 등기특별회계가 유일하다.

따라서 집행실적과 편성목적 등을 고려할 때 등기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1

현황

2018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18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12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100만원(7,693.8%) 증가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납분(7억 8,900만원)과 관사임차보증금(4억 4,000만원)¹⁾이 반영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18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9	16	16	1,247	1,231	7,693.8

자료: 헌법재판소

2018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454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5,400만원(6.4%) 증가하였다.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18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9,233	42,736	42,736	45,490	2,754	6.4

자료: 헌법재판소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관사임차보증금의 경우 격년(2년 계약)으로 세입·세출을 계상하고 있으나 동일건물에 대해 재계약될 경우 보증금이 승계되어 징수하지 않고 있다.

2018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청사및공관시설관리
 ②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청사및공관시설관리 사업은 관
 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격년 주기 임차보증금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30.9% 증가하
 였고,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2018년도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
 공사비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30.5% 증가하였다.

[헌법재판소 2018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17		2018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청사및공관시설관리	1,355	1,355	1,774	419	30.9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2,040	2,040	2,662	622	30.5
합 계		3,395	3,395	4,436	1,041	30.7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①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내 기념식, 국제 컨퍼런스 등 대내외 교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② 헌법재판연구원의 청사이전 비용 등을 반영하였다.

2018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2018년도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활용계획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헌법재판연구원 사무공간 적정화 필요

가. 현 황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¹⁾ 사업은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²⁾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은 26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이전을 위해 5억 9,600만원이 신규반영되었다.

[2018년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6 결산	2017		2018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2,026	2,040	2,040	2,662	622	30.5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이전	0	0	0	596	596	-

자료: 헌법재판소

나. 분석의견

헌법재판연구원 신청사 내 연구관실의 적정면적 배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 사옥(서울 중구 소재)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임차면적은 3,728㎡, 연간 임차비용은 15억 4,200만원이다. 이에 국회는 2016년 예산안 심사 시 헌법재판연구원 현원이 48명³⁾임을 감안할 때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036-307

2)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에 따라 2011년 1월 설립된 기관으로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명당 사무공간 면적이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 기준에 비해 과다한 반면, 교육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차료 절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을 나라키움 역삼동 B빌딩(서울 강남구 소재)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전시기는 2018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전예정인 신청사 임차료는 연 14억원 수준으로 기존 임차료 15억 4,200만원에 비해 1억 3,800만원 낮고, 보증금은 없다.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계약 비교]

		기존 청사	신청사
임차건물		예금보험공사 사옥 3개층(3~5층)	나라키움 역삼동 B빌딩 4개층(5~8층)
연간 임차료		15억 4,200만원 - 임차료 10억 7,100만원 - 관리비 4억 7,100만원	14억 400만원 - 임차료 9억 6,000만원 - 관리비 4억 4,400만원
임차료/월		89,241,150원	80,000,000원
관리비/월		39,266,100원	37,000,000원
보증금		7억 8,950만원	없음
계약 면적	총면적	3,728㎡	4,106㎡
	전용면적	2,306㎡	2,417㎡
	공용면적	1,422㎡	1,689㎡

자료: 헌법재판소

신청사 총면적은 기존 청사에 비해 378㎡가 증가한 데에 비해 전용면적은 111㎡만 증가하였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전용면적 활용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강의실 면적은 519.0㎡에서 486.3㎡로 축소되었고, 헌법연구관·책임연구관 등 연구인원이 사용하는 연구관실의 면적은 기존 469.5㎡(25실)에서 601.7㎡(28실)로 확대되었다.

3) 2015년 10월 기준이며, 정원 35명 외 기간제근로자 13명을 더한 것이다. 2017년 9월 현재 정원은 36명, 현원은 기간제근로자 12명을 포함하여 48명이다.

4)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 10. pp.116~119.

[헌법재판연구원 신청사 전용면적 활용계획안]

(단위: m²)

	사무실 명	당 초	변 경	증 감
강의실	소강의실	34.0	42.6	8.6
	대강의실	205.0	221.5	16.5
	중강의실	117.7	116.4	△1.3
	IT교육실	108.4	65.1	△43.3
	분임토의실	53.9	40.7	△13.2
	소 계	519.0	486.3	△32.7
연구관실		469.5(25실)	601.7(28실)	132.2

자료: 헌법재판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연구인원 26명이 각각 하나의 연구관실을 사용하더라도 공실이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1명당 21.5m²의 단독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비추어 볼 때 5급 기관장실보다 넓어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

(단위: m²)

계급별	구분	일반사무실	단독사무실	비고
2·3급	국장실·담당관실	-	33	집무실
	기관장실	-	50	집무실·부속실
	위원	17	-	집무면적
	3급과장	17	-	집무면적
4급	국장·과장	17	-	집무면적
	서기관	7	-	집무면적
	기관장실	-	33	집무실·부속실
5급	과장	17	-	집무면적
	사무관	7	-	집무면적
	기관장실	-	17	집무실
6급 이하	과장	10	-	집무면적
	일반직원	7	-	집무면적
	기관장	17	-	집무면적

자료: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을 바탕으로 재작성

집 필

총괄 |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심의 | 고기석 사업평가심의관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임종수 사회예산분석과장
박혜진 행정예산분석과장
정연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수옥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채미강 예산분석관
오명희 예산분석관
조흥연 예산분석관
오덕근 예산분석관
이은경 예산분석관

지원 | 이정아 행정실무원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7년 10월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806-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